

사회복지분야 대학교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연구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연구수행기관 :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연구책임자 : 심창학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동연구원 : 강욱모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화옥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인권보장과 존중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계나 실천영역에서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사회복지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인권감수성 향상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특히 예비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특히 예비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과목의 최상의 실행에 필요한 요소 및 이의 환경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교육과목은 인권교과목과 인권 관련교과목을 합친 개념으로서 이는 결국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인권관련교과목)에 인권적 요소의 강화와 새로운 교과목인 인권교과목 개설 등 양면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은 사회복지계의 인권교육 관심의 당위성 및 현황 분석 부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권과 사회복지 연계의 타당성, 유용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복지분야에서 나타나는 인권교육의 실상을 네가지 영역 즉 사회복지관련법과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에서 나타나는 인권교육,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인권교과목에서 나타나는 인권교육 반영 정도,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학과 개설 과목에서 차지하는 인권 관련교과목 비중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제3장은 사회복지 전공학과와 인권교육의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 미국과 영국은 아직까지 세계인권교육 2차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경우 2009년 4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시험과목에 “권리옹호와 성년후견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인권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데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4장은 사회복지학과와 새로운 인권교과목으로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해서 교과목 개요, 목표 및 참고교재 등을 먼저 제시했다. 이어서 인권과 사회복지개관,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인권취약인구와 사회복지실천의 세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목 내용 및 교과목 교육방법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마지막 본문 장인 제5장은 사회복지학과 인권교육개설을 위한 전략 및 환경 조성 부분이다. 먼저 개설전략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상향식 접근 방법과 하향

식 접근방법의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위한 교육정책으로서 본 연구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적 대안 등 총 일곱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 특히 예비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과목의 최상의 실행에 필요한 요소 및 이의 환경적 요소의 확인에 초점을 두었다.

목 차

연구요약	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II. 사회복지계의 인권교육 관심의 당위성과 현황	9
1.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11
2. 사회복지계의 인권교육과 인권교육과목 개설 현황 및 문제점	33
3.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 개설 부진의 원인: 제도적 동형화	65
III. 대학교 인권교육 해외사례	69
1. 사회복지 인권교육의 해외동향	71
2. 각국 대학의 인권교육	76
IV.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 개발: 『인권과 사회복지』	101
1. 교과목 개요	103
2. 교과목 목표 및 참고교재	104
3. 교과목 내용	106
4. 교과목 교육방법	113
V. 사회복지학과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위한 전략 및 환경 조성	117
1. 인권교육과목 개설전략	119
2.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위한 교육정책	127
3.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위한 교육환경	139

VI. 결 론 143

■ 참고문헌 151

표 목 차

〈표 II-1〉	인권 세대의 진화와 사회복지분야의 관련성	16
〈표 II-2〉	인권 기반 빈곤 감소 전략	32
〈표 II-3〉	한국 법령의 인권교육규정 개관	35
〈표 II-4〉	정신보건법의 인권교육관련 조문제목과 조문내용	36
〈표 II-5〉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대상의 구분 (종사자)	37
〈표 II-6〉	인권 교육 관련 정신 보건법 시행규칙 조문 제목과 조문내용	37
〈표 II-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인권교육 관련 조문제목과 조문내용	38
〈표 II-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인권관련 조문제목과 조문내용	39
〈표 II-9〉	2013년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관	40
〈표 II-10〉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신규 비교	41
〈표 II-11〉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신규 비교	42
〈표 II-12〉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신규 비교	43
〈표 II-1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신규 비교	43
〈표 II-1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44
〈표 II-15〉	연도별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상황	45
〈표 II-16〉	2014년 사회복지시설평가해당기관(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공통 지표	47
〈표 II-17〉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의 인권(교육)반영 현황	48
〈표 II-18〉	학위 과정별 인권교과목 개설 현황	51
〈표 II-19〉	학문영역별 인권교과목개설 분포현황	53
〈표 II-20〉	사회복지학과 개설 인권교과목 개관	56
〈표 II-21〉	사회복지학과 개설 인권교과목 주별 강의주제 분포	57
〈표 II-22〉	사회복지학과 개설 인권교과목 강의 주제의 영역별 구성	58
〈표 II-23〉	사회복지학 교과목 개관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	61
〈표 II-24〉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를 통해서 본 인권관련교과목의 추이	62

〈표 II-25〉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및 학점(대학·전문대학의 경우)	65
〈표 II-26〉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2013년 기준)	66
〈표 II-27〉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국가고시 시험과목 및 문제수	67
〈표 III-1〉 IFSW의 사회복지실천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 원칙	75
〈표 III-2〉 미국 대학교 사회사업학부에서 제공되는 인권 내용을 가진 수와 코스들의 제목	77
〈표 IV-1〉 『인권과 사회복지』 주차별 강의계획	112
〈표 V-1〉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영역별 배점비율 (%)	123
〈표 V-2〉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 관련기관 일부 사례	141
〈상자 II-1〉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방법	22
〈상자 V-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개관	124
〈상자 V-2〉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개관	125
〈상자 V-3〉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권교육교재개발 고려사항	135

그림 목 차

[그림 II-1] SPF의 개관과 구성 요소26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권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핵심이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할 대명제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은 거의 모두 공공 및 민간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 단체, 시설에서 일하게 된다. 사회복지 현장의 주요 업무는 행정이나 사례관리 업무를 제외하곤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인서비스(personal services)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대면 국면에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것과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것 등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 유린은 전혀 새로운 사회현상이 아니다. 1987년의 형제복지원 사건과 최근 영화 도가니의 상영을 통해 알려진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은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인권침해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역시 최근의 화두이다. 저임금,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이용자의 폭력, 기관 내 안전사고 그리고 최근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 역시 인권 관점의 틀 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사안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사회복지는 곧 인권이며 사회복지직은 인권전문직’이라는 점은 절대명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과거 발생했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미연에 방지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계 및 사회복지실천계에서의 관심은 너무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동시에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클라이언트에만 국한되지 않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와 같은 서비스 제공인들 역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은 객관적,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 대학교의 기존 교육과정이 인권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현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문제의식 함양 그리고 대안 모색의 과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교육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에서 나타나는 인권적 요소의 반영 양상을 살펴보면 행정, 법제, 정책 외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교정복지와 같이 대인서비스 영역별 교과목이 있으나 교과목 내용 가운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문제에 지면을 할애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인권 문제가 소주제로만 다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와의 인권의 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도 깊은 논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대인서비스 영역별 구체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습득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분야 대학교에 기존의 교과목 외 인권과목을 개설하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라는 이론적 학습을 넘어 인권의 실천적 교과과정에 인권적 요소의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인권교육과목의 개설은 현장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숙인 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인권관련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인권관련항목의 등장은 사회복지실천현장으로 하여금 인권감수성을 지닌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대한 관심 제고로 연결된다. 한편, 사회복지실천인력의 양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대학은 이러한 현장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대학에서의 인권교육과목 개설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그동안 발생했던 인권 침해 사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덜했던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실행은 현재 그리고 향후에 학계나 실천현장이 인권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예비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실행은 인권감수성을 지닌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욕구에 부응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점으로서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실행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본질과 대응방안에 대한 객관적, 포괄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대학생 특히 예비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과목의 최상의 실행(best practice)에 필요한 사항 및 이의 환경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한국 대학의 인권교육과목의 개설 현황 및 이와 관련된 외국 사례 분석을 토대로 인권교과목을 개발함과 동시에 인권교육과목이 개설되기 위한 전략, 교육정책 그리고 인권교육과목의 효과적인 실행에 필요한 교육환경 등을 살펴볼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 내용(범위)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계의 인권교육 관심의 당위성과 현황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본 후 사회복지계의 인권교육과 인권교육과목 개설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해외 선진 사례 소개 부분이다. 여기서는 특히 영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학 교과목과 인권요소 접목의 역사, 방법, 현황 분석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과제의 세 번째 부분은 사회복지 관련 인권교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 연구 부분이다. 현 단계에서 본 연구진이 구상하고 있는 인권교과목의 이름은 『인권과 사회복지』이다. 기존 인권교과목의 내용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인권과 사회복지』 교과목개요, 목표, 내용 그리고 교육방법 등이 세 번째 부분의 핵심이 될 것이다.

본 연구과제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은 인권 교과목 개설에 필요한 전략 및 환경적 요인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은 인권교과목 개설 전략과 교육정책 그리고 교육환경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개설 전략은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구분될 것이며, 교육정책은 넓게는 교육부의 인권교육정책에서부터 사회복지교육협의회 그리고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의 교육정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환경은 인권과 사회복지, 특히 사회복지교육 간 연계 강화와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역할 및 활동, 인권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복지시설간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용어들의 개념을 정의 규정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과목, 인권관련교과목, 인권교과목 등 대학의 인권교육과 관련된 유사한 용어가 사용될 것이다. 상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용어의 개념을 엄밀히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인권교육과목은 대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 중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과목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인권교육과목은 인권관련교과목과 인권교과목을 합친 개념인 것이다. 한편 인권관련교과목은 대학교 개설 과목 중 1주차라도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과목을 지칭한다. 이는 인권관련교과목에서 인권은 학기 중 다루고 있는 여러 강의 주제의 하나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권교과목은 인권문제가 개설 학기의 핵심주제인 과목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과목명에 인권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과제는 사회복지학과에 인권교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후술하겠지만 사회복지학과의 개설 과목 중 상당수는 인권관련교과목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권관련교과목이 아니라 인권교과목이 본 연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미리 강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순서 및 목차

이상 내용을 반영한 본 연구과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I. 서론

II. 사회복지계의 인권교육 관심의 당위성과 현황

1.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2. 사회복지계의 인권교육과 인권교육과목 개설 현황 및 문제점
3.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 개설 부진의 원인: 제도적 동형화

III. 대학교 인권 교육 해외 사례

1. 사회복지 인권교육의 해외동향

2. 각국 대학의 인권교육

IV.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 개발: 『인권과 사회복지』

1. 교과목 목표
2. 교과목 개요 및 참고교재
3. 교과목 내용
4. 교과목 교육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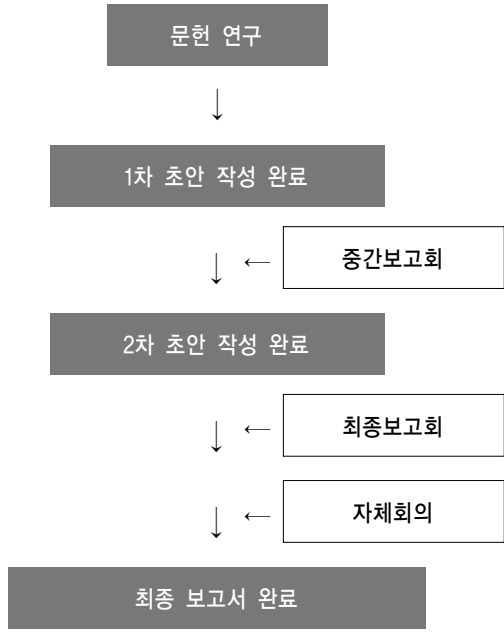
V. 사회복지학과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위한 전략 및 환경 조성

1. 인권교육과목 개설전략
2.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위한 교육정책
3.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위한 교육환경

VI. 결론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수행될 것이지만, 문헌연구를 통해 초안이 마련되면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다. 먼저 3명의 연구진이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인권교육 관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자료,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 관련 입법자료, 학술지 논문 및 저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문헌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권교육의 주요 영역들과 내용들을 도출할 것이며 도출된 보고서 1차 초안을 중심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학계의 인권 및 사회복지전문가, 인권관련 실무 종사자, 인권위원회 담당자의 다각적 의견을 수렴하여 2차 초안을 마련할 것이며,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기 전에 최종보고회의 개최 및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 과정을 간략히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I

사회복지계의 인권교육 관심의 당위성과 현황

1.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11
2. 사회복지계의 인권교육과 인권교육과목 개설 현황 및 문제점	33
3.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 개설 부진의 원인: 제도적 동형화	65

1.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사회복지교육에서 인권 요소의 강조가 공감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인권과 사회복지 양자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권은 사회복지라는 절대 명제가 입증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를 인권과 사회복지 연계의 타당성과 유용성 그리고 실행가능성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타당성은 인권과 사회복지의 논리적 연계에 관한 것으로 인권과 사회복지 양자가 이론적, 현실적으로 상호중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유용성 측면은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계 즉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계가 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타당성이 담보되지 못한 유용성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비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반면 유용성이 입증되지 못한 채 타당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실천적 함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타당성과 유용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타당성과 유용성이 담보된다 하더라도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계가 반영된 정책 즉 인권기반 사회복지정책의 사례가 없거나 혹은 수립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정책적 의미가 상실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실행가능성은 인권과 사회복지간의 연계를 입증하는 마지막 절차라 할 수 있다.

1) 인권과 사회복지 연계의 타당성¹⁾

(1) 인권개념의 재해석: 국가의 적극적 의무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및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인권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에서 나타나는 국가 역할은 자기 억제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여기서의 국가 역할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삶에 간섭할 적극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간섭을 억제하는 자기 억제의 의무를 지닌다고 해석되어 왔다(Fredman, 2009: 백승호, 2010: 165에서 재인용). 따라서 인권담

1) 이 부분은 심창학, 2011: 93-99을 발췌, 재정리한 것임.

론에서 복지권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국가의 복지에 대한 개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약함으로써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최소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백승호, 2010: 165-166).

이러한 인권의 전통적 접근은 사회권의 최근 의미조차 제대로 담지 못하거나, 담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 왜냐하면 개인 간섭의 억제 의무는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을 전제로 할 때 실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불평등한 사회에서 억제의 의무 원칙은 결국은 유산 계급 등 특정 집단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충족을 지칭하는 사회권 역시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최소한의 조건’만 하더라도 이의 수준, 정의의 주체에 따라 생물학적 생활수준(육체적 효율성)의 수준에서부터 문화적인 인간 생활수준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인권의 전통적 접근은 생물학적 최저 수준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사회권의 지향점과 심각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인권 실행에서 필요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프레드먼(Fredman, 2008)의 국가의 적극적 복지 제공 의무 이론은 인권 개념의 재해석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계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프레드먼의 이론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명제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레드먼의 이론은 인권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에 의하면, 본래 권리라는 개념은 권리의 주체(A)가 의무의 주체(B)에 대해 어떠한 근거(C)에서 어떤 권리(D)를 요구한다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권의 전통적 해석은 이 중 권리 주체(A)의 주장에 초점을 두다 보니 권리 주체의 규범력은 강했지만 의무 주체에 대한 구속력은 약하게 나타났다고 비판한다²⁾. 구체적으로 전통적 인권 담론에서는 권리의 주체인 개인은 강조되었지만 개인의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이를 프레드먼 책의 번역자인 조효제는 올리히 벡의 견해를 인용, 용암현상(fading-out phenomenon)으로 부연설명하고 있다. 전체 현실 중 어떤 부분만 또렷이 강조되고 나머지 부분은 배경 그림자처럼 희미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둘째, 인권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자유의 개념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란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러한 선택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자유란 불간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선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촉진해 주는 데서 온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억압보다는 빈곤, 질병, 저발전, 저수준의 교육 등이 자유를 억압하는 주요 요소이며, 바람직한 인권 실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반(anti) 자유의 주요한 원천 등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프레드먼의 견해이다.

셋째, 이상의 견해는 결국 국가 역할의 강화 및 개입 영역의 확대를 가져오는데 프레드먼은 이를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가는 개인의 선택을 촉진할 의무, 다시 말해 실행 가능한 선택 지점들의 범위를 늘리고,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강압을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우국희, 2010:134). 만약 국가가 사회권에 포함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인권 침해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넷째, 구체적으로 적극적 의무의 구성 요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구체적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Fredman, 2008: 203-204).

이러한 목표 아래서 적극적 의무를 위한 네 가지 구성 요소(parameters)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유효성(effectiveness)**이다. 어떤 특정 시점에 실제로 어느 정도 자원이 제공되었든, 또는 시민들의 자구책을 돕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든 간에 적극적 의무는 그 성격이 적절해야 하고, 그러한 권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지녀야 한다. 둘째는 **참여성(participation)**이다. 이런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만 그 결과가 의미 있는 것이다. 셋째는 **책무성(accountability)**이다. 정부 당국은 어떤 권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감안해서 도출된 견해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정당화를 시도해야 한다. 책무성은 국가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자율적 공간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후략). 마지막 요소는 **평등성(equality)**이다. 충족시킬 의무의 초점은 약자들과 타인들보다 자기 권리를 누릴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평등성은 처우의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이다.

(진한 표시는 발표자가 강조한 것임)

이상 프레드먼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 이론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회권 인식, 그리고 이에 근거를 둔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반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추상적 권리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정진경, 2006: 415). 이는 사회적 기본권 해석에 있어서 권리, 의무의 추상성, 행정부의 재량권 존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조항은 통제 규범(재판규정)이 아니라 행위 규범으로서의 역할에 한정짓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프레드먼이 제시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는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제도가 어느 정도 적극적 의무의 구성 요소를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 답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많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질적으로 열악한 정책 및 제도의 수준이 사회권의 소극적 해석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프레드먼의 국가의 적극적 의무 이론은 사회권 담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둘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계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인권 및 자유의 재해석, 국가의 적극적 의무 등 프레드먼의 이론에서 인권과 사회복지가 만나는 지점은 상당히 많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야말로 인권의 재해석, 국가의 적극적 의무 이론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분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프레드먼의 국가의 적극적 의무 이론은 인권과 사회복지 연계 가능성의 논리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 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인권 세대의 전개와 사회복지

여기서 말하는 인권 세대는 1997년 체코의 법률가이자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국제 인권 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의 초대 사무총장인 바삭(Karel Vasak, 1977)이 제시한 것으로 이후 아이프(J. Ife, 2001)에 의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한마디로 인권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외연 확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개념이다. 즉 이들 학자에 따르면 인권의 관심 영역 및 개입 방법이 제1세대부터 제3세대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인권의 세대별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외연 확장이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계에 주는 의미를 도출하

기로 한다.

먼저, 제1세대 인권은 시민적, 정치적 영역, 즉 인간의 자유권에 관한 것이다. 자유권은 타인의 강제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의 보장과 관련되어 있다³⁾. 따라서 제1세대 인권 실천은 자유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자유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 옹호, 주장하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제1세대 인권 실행은 적극적 차원 보다는 소극적 차원의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유권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와 관계가 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관한 것도 아니다. 예컨대, 시민단체 위주로 진행되었던 장애인 이동 보장 관련 실천 활동은 사회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제1세대 인권 실행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인권 2세대는 인권 내용에서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들을 말한다. 사회권과 직결되는 권리로서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를 의미하는 소극적 조치 보다는 적극적 차원의 인권 실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등의 복지권, 일할 권리,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와 같은 노동권,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여가에 대한 권리 등의 문화적 권리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의 가치와 직결되는 인권 세대라 할 수 있다.

제3세대 인권은 집단적 맥락에서 이해가 필요한 집단적 권리이다. 경제개발에 대한 권리, 안정적이고 공동체적 사회에서 살 권리,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공기, 물, 식량에 대한 권리, 인간의 완전한 잠재성이 획득되도록 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을 들 수 있다(이용교, 2004: 29). 집단적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제3세대 인권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견 사회복지와는 무관한 권리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제3세대 인권 역시 사회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권리이다. 예컨대 사회복지실천방법 중 지역사회 조직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권리가 바로 제3세대 인권이다(이용교, 2004: 43). 주지하다시피 지역사회조직은 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등의 방법(모델)을 통해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그 결과로서의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다문화 사회의 등장, 외국 이주 노동자의 권익 보장 등의 문제 역시 지역사회조직에서

3) 이는 프레드먼의 전통적 인권 해석과 상응하는 인권 세대이다.

다루어야 할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현안을 인권 관점에서 접근할 때 훨씬 더 바람직한 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제사회복지 역시 제3세대의 인권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복지 영역이다. 국제적 빈곤 지역에 대한 활동을 통해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이의 해결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활동들은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계 가능성 및 실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래 <표 II-1>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1> 인권 세대의 진화와 사회복지분야의 관련성

	소극적 차원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차원)	적극적 차원 (자원투입과 구체적 정책이 필요한 차원)	관련되는 사회복지분야
시민적, 정치적 영역의 권리 제1세대	- 고문 및 가혹한 처우 - 자의적 구금 - 초법적 살인 및 실종 - 불공정한 재판 - 선거부정	- 사법개혁 - 법 집행 절차 및 교정 시설 개선 - 법 집행 공직자 인권 교육 - 경찰처우개선 - 선거제도 개선 - 과거 인권 침해 사건 조사 및 과거사 정리	장애인 복지 등 적용 대상별 복지 (예: 장애인 이동권 보장)
경제·사회·문화적 영역의 권리 제2세대	- 보건, 복지, 교육 영역에서의 젠더, 인종, 나이, 언어 등에 따른 차별관행 및 정책	- 보건 - 복지 - 교육 - 기업 등 사적 주체에 의한 인권 피해자 구제	사회복지 전분야 (사회권과 직결)
연대, 집단 영역의 권리 제3세대	- 환경 훼손 - 지구 온난화 - 불공정 무역	- 과거사 정리, 진실/화해/배상 - 외채탕감 - 해외개발원조	국제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출처: 조효제, 2007의 내용과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재정리.

이렇게 볼 때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와 인권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의 사회복지 활동은 제1세대 인권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제2세대 인권의 핵심에는 사회권이 자리 잡고 있다. 일견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제3세대 인권 역시 사회복지의 중요한 실천 방법 중의 하나인 지역사회조직과 직결되어

있다. 게다가 지역사회조직에서 다루어야 될 새로운 사회문제는 인권적 고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인권과 사회복지의 논리적 연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프레드먼의 국가의 적극적 의무 이론을 접목 시킨다면 사회권에 바탕을 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권 기반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2) 인권과 사회복지 연계의 유용성⁴⁾

인권과 사회복지의 논리적 연계를 통해서 타당성이 증명되었다면 살펴보아야 할 다음 단계는 인권과 사회복지 연계의 유용성 측면이다. 즉 인권 기반 사회복지의 수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를 기존의 사회권 기반 사회복지가 보여주고 있는 한계의 측면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나타나는 클라이언트 접근방법의 측면 등 두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권기반 사회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

무엇이 사회권인가에 대한 단일 정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이 사회복지의 권리적 토대라는 점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견해로서 마샬(T. H. Marshall)의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을 들 수 있다⁵⁾ (T.H. Marshall, 1950). 마샬의 시민권개념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민권을 지위(status)로 정의하고 있다. 즉 시민권은 지위의 상이성에 따라 자격이 다를 뿐 당연히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즉 시민권은 사회 성원으로서 시민의 자격(citizenship)에 부여되는 권리로서, 18세기-19세기에는 공민권과 정치권만을 의미했으나 20세기에 이르러 사회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4) 이 부분은 심창학, 2013: 124-137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5) citizenship이 시민권으로 번역되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국내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자 한다. citizenship의 권리적 구성요소를 강조할 때는 시민권 용어가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권리적 요소 외에 시민으로서의 자격, 소양 등이 포함되어 있는 용어로 사용될 때는 시민성, 시민정신 등의 용어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민권의 구성 요소로서 사회권의 중요성이다. 사회권은 가장 나중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민권, 정치권 등 다른 시민권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플랜트(Plant)는 사람들이 독립적인 시민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와 면책은 전적으로 추상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권의 확립은 단순히 사회보장 급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완결된 형태로서의 시민권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권은 시민권의 토대가 되는 지위 평등화의 보증이기도 하다 (안치민, 2006: 383-384에서 재인용).

셋째, 지위에 의해 정의되는 시민권은 시장 활동 참여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비경제적 개념이며, 경제활동에 대한 기여에 부착되는 상대적 가치로 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말로 시민권의 요소들이 비조건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스핑 엔데르센이 제시한 탈상품화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다 (안치민, 2003: 20)⁶⁾.

한편, 사회권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현대복지국가의 권리적 토대라는 점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권기반 사회복지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제기된 복지국가 위기론 그리고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재편과 맞물리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판단이다. 첫째,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적용 대상에서의 사각지대 문제이다. 즉,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수급요건의 미충족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요건의 미충족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규모가 전체인구의 2.3%인 103만여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1:1). 국가의 재정능력 등을 이유로 이러한 사각지대 발생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나 사회복지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러한 사각지대 현상 자체가 사회권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

6) 급여의 종류, 수급 요건의 국가별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빈곤 집단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최저 소득 보장 (National Minimum Income)제도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사회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절대명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 또한 사회권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권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다. 우선 사회권에 내재되어 있는 모호성 및 불평등적 역사성을 들 수 있다. 우선 유럽에서 사회권의 원천은 전국 차원이 아닌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에 바탕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 Staub-Bernasconi, 2007: 145). 뿐만 아니라 사회권 인정의 바탕이 된 마샬의 시민권 개념 역시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⁷⁾. 그리고 사회권의 법적 성격 역시 사각지대를 낳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권은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에 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과는 달리 행정부의 재량이 우선시되는 국가 프로그램 차원의 성격 혹은 추상적 권리라는 견해가 아직도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윤찬영, 2011: 303-321). 둘째, 사회권기반 사회복지의 최근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복지 정책을 매개변수로 시민자체를 양분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 제도 및 유럽의 사회부조제도에서 나타나는 근로연계복지를 들 수 있다⁸⁾. 근로연계복지는 수급자에 대한 기존의 무조건적인 급여제공과는 달리 경제활동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부 급여 제공의 성격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의무 불이행시에는 급여 수준의 삭감 혹은 급여 중단이라는 징벌적 성격 역시 근로연계복지 특징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근로연계복지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정책의 도입이 사회권 개념의 인식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치있음 (deserving)’ 개념의 부활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J.-M. Bonvin and N. Farvaque, 2007). 사실 ‘가치있음’ 용어는 19세기 구빈법 시대의 용어로서 그 여부에 따라 빈곤집단에 대한 처우 방식이 다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후 현대복지국가와는 무관한 개념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근로연계복지개념은 수급자를 양분시키고 있는데 이에 내재되어있는 개념이 바로 ‘가치있음’ 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와의 계약(action plan) 체결 및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수급자는 가치있는 시민 혹은 적극적

7) 예컨대 안 네빌은 마샬의 시민권 개념은 포용성이 약하며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백인, 남성, 이성애자로 개념화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A. Neville, 2010a).

8) 유럽에서는 활성화 전략(activation strategy)으로 불리기도 함.

시민(active citizen)으로 인정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낙인 부여(stigmatization)와 함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권리 박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소극적 시민(passive citizen)으로 간주되는 것이다(J.-M. Bonvin and N. Farvaque, 2007: 58; A. Serrano-Pascual, 2007: 19-21). 이는 결국 지위에 바탕을 둔, 무조건적인 권리로 간주되었던 사회권에 대한 중요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권을 포함한 시민권 개념이 기존의 지위에서 계약의 성격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J. F. Handler, 2003)⁹⁾. 여기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계약의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계약 자체의 불평등 관계, 계약 내용의 적절성 여부는 논의의 대상에서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자체가 자연적인(당연한) 것으로 간주된 채 단지 계약의 이행 여부만이 ‘가치있음’ 여부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 본 바와 같이 사회권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성격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의 국가 간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의 제한성 및 시민의 양분화라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본 연구는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실행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후술하겠지만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적용대상의 포괄성과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측면에서 사회권기반 사회복지가 노정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상호 배치되거나 인권기반 사회복지가 사회권 기반 사회복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은 강조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사회권은 인권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사회권은 인권 기반 사회복지의 출발점인 것 또한 사실이다. 단, 여기서 강조되는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인권의 요소의 강조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참여보장, 수급요건 보다는 사회구성원의 천부적 권리에 바탕을 둔 적용대상의 확인,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사회권뿐만 아니라 자유권, 정치적 권리 등의 보장에 바탕을 둔 포괄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의 수립 그리고 이의 사회복지실천현장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9) 한편 이는 정부에 의한 시민권(citizenship)의 변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먼의 네가지 시민상 중 근로자 시민(worker citizen)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 역시 포용과 평등에의 지름길로 간주되고 있는 근로 자체가 사실은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J. Newman, 2013).

(2) 욕구기반 접근방법에서 권리기반 접근방법으로

욕구기반 접근방법(needs-based approach)은 짐 아이프(J. Ife)가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전통적 방법을 언급하면서 제시한 용어이다 (J. Ife, 2001 ; 2006). 주지하다시피 욕구는 사회복지의 핵심개념임과 동시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간주된다. 짐 아이프가 욕구기반 접근방법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욕구 그 자체보다는 이를 누가 규정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욕구 여부 및 정도의 확인 그리고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두가지 점에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 이용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 결정권은 사회복지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관련하여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서비스 선택 및 집행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사회복지실천가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이는 결국 사회복지실천가의 가치에 따라 욕구의 확인 및 서비스 처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짐 아이프는 다음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욕구 판단은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다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가치·이데올로기 판단임과 동시에 전문가적 식견을 반영하는 판단인데, 예를 들어 가정폭력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억압적인 것으로 보는 사회복지사와 보수적인 가부장적 ‘가족가치’를 가진 사회복지사는 서로 다른 욕구 정의를 내릴 것이고 이 두 사회복지사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가족의 욕구에 대해 쉽게 합의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욕구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닌 것이다(J. Ife, 2001: 136).

이의 대안으로 짐 아이프가 제시하는 권리기반 접근방법(rights-based approach)의 핵심 개념을 나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 존중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서비스 제공의 근거 역시 욕구 사정이 아닌 권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권리의 인정 여부 역시 사회복지실천가가 아니라 인권 협약, 조약, 법제 더 나아가서 인권 전통 등 다른 원천에 바탕을 두게 된다. 둘째, 사회복지실천 접근에 있어서 인권 관점의 강조이다. 짐 아이프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보다는 본질적 인간성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실천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문제는 이용자가 지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에 제대로 부

응하지 못하는 체계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사회학에서의 인권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간 및 제도의 취약성 그리고 집단 동정심 등 세가지 요소를 인권이론의 테제로 제시한 터너의 견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cf. B. S. Turner, 1993). 셋째, 권리의 집단적 성격이다. 이와 관련하여 짐 아이프는 장애아동의 권리와 가족 구성원의 권리간의 충돌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상자 II-1〉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방법

- ㉠ 장애아동의 권리(예: 아동권리협약이 기준)와 이에 상응하는 부모, 형제, 가족의 책임 확인
- ㉡ 가족의 권리 (예: 부모의 근로할 권리, 의미) 확인
- ㉢ ㉠과㉡를 바탕으로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 계획 마련/권리의 적정화
- ㉣ 협력적 관계 / 개인적 비난 및 이기주의 기피

출처: J. Jfe, 2006: 39의 관련내용에서 발췌.

욕구와 권리의 상호대칭의 적절성,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권리기반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기반 접근방법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인정 여부가 외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것이라는 점, 서비스 계획 단계에서 이용자의 참여보장 및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욕구기반 접근방법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짐 아이프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인권관점은 사회복지실천가로 하여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J. Jfe, 2006: 32). 권리기반 접근방법은 기존의 사회복지실천가의 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의 실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 바로 인권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3) 인권과 사회복지 연계의 실행가능성: 인권기반 사회복지정책의 사례¹¹⁾

인권 관점을 통한 사고방식의 전환 가능성은 비단 사회복지실천영역에만 한

10) 이의 자세한 내용은 김미옥·김경희, 2011: 32-33을 참조.

11) 이 부분은 심창학, 2013: 145-151을 발췌, 재정리한 것임.

정된 것은 아니다. 한 학자의 견해와 같이 인권관점은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과 실행될 것에 대한 대안적 사고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A. Neville, 2010b: 235). 본 장에서는 사회권기반 사회복지의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구체적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기본원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사례 제시를 통해 실행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1) 인권기반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첫째, 특정 정책 및 제도를 입안, 시행함에 있어서 인권관점은 적용 대상의 포괄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인권 관점은 자연적 관점과 사회구성체적 관점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인권은 자연적, 보편적인 것이며 모든 인간에 내재적인 것이라는 자연권적 관점과 달리 사회구성체적 관점은 모든 권리는 특정 사회의 역사적 맥락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인권 역시 특정 사회의 가치, 가치의 위계 구조, 권력의 산물로 보고 있다 (A, Neville, 2010a: 3-4). 이러한 사회구성체적 관점은 인권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관점인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특정 정책 및 제도의 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의 사회구성체적 관점의 개입은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컨대, 사회권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인권개념의 실행 역시 특정 국가의 상황에 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특정 정책 및 제도의 입안 및 시행에 필요한 인권 관점은 자연권적 관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사각 지대의 문제 등 사회권기반 사회복지가 노정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둘째,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이용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대변없이 참여 없다 (No particip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말과 같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익 표현을 위한 참여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회 문제의 확인 및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된 사례는 거의 없다. 예컨대, 빈곤 문제의 경우 이에 대한 정책적 혹은 학문적 관심은 통계 수치 개념을 통한 빈곤율 혹은 빈곤의 심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에 무엇이 빈곤인가 하는 빈곤의 본질적 문제는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

되어 있었다. 이는 ‘빈곤하기 때문에 빈민이 아니라 빈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빈곤하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용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인권 관점 (Fredman, 2009; J. Ife, 2006; H. Dean, 2007)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 경청을 통한 빈곤 문제의 본질적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는 프랑스와 세계은행 등 국제적으로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²⁾.

셋째,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기존 사회권기반 사회복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에서의 인권 관점의 중요성은 사고방식의 전환에 있다. 그리고 사회권기반 사회복지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의의가 있다. 최근 지자체 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권기본계획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제노동기구 등 권리기반 사회적 보호를 주장하는 국제기구의 접근방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한 국가의 사회복지의 변천에는 권리적 요소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압력, 정치적 이해관계, 기존의 서비스 제공 패턴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A. Nevile, 2010a).

(2) 인권기반 사회복지정책 사례 1: 국제노동기구의 권리 기반적 사회적 보호

권리기반적 사회적 보호접근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의 움직임은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보장기준제시를 통한 인권적 접근 단계이다. 우선 1952년에 채택된 ‘사회보장(최저수준)협약’ (협약 102호)을 들 수 있다¹³⁾. 국제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실정법을 확인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는 협약 102호는 사회보장에 포함될 영역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의료, 상병수당, 실업급여, 노령연금, 산재급여, 가족수당, 출산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가 바로 그것이다. 영역 못지않게 협약 102호가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영역별 적용 대상 규모 및 급여 수준 등의 최저기준(minimum standard)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최저기준은 절대적 성격과 상대적 성격을 공

12)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지자체 마다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포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일정비율 이상의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은행 역시 20,000여명에 가까운 빈곤 집단의 참여하에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D. Narayan et al. 2000.

13) Social Security(Minimum Standards) Convention No. 102 (1952).

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권관점에서 세계 공동체가 목표로 하는 최저 기준의 성격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는 당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교 작업을 통해 도출되었던 것이다 (전광석, 1988: 366). ILO의 사회보장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노력은 이후의 영역 확대 및 세분화 그리고 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계속되었다. 예컨대 출산급여는 모성보호라는 이름하에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로 세분화되었다 (2000년, 협약 183조와 191조). 그리고 영역별 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의 개념 도입을 통해 각국의 사회보장 보호수준의 상향조정을 유도하는 노력이 가시화되었던 것이다¹⁴⁾.

ILO의 첫 번째 단계가 독자적이면서도 사회보장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UN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노력이라는 성격과 함께 사회적 보호 개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의 대표적 사례가 2009년 발족된 ‘사회적 보호 층-국제공조체계 (Social Protection Floor-Initiative; 이하 SPF-I로 칭함)’이다¹⁵⁾. 우선 사회적 보호 용어에 대한 광의의 개념은 사회보장보다 큰 개념이다. 예컨대 사회보장 개념이 현금 급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사회적 보호 개념은 서비스의 주요성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빈곤 및 사회적 배제 등의 신사회위험과 가족 혹은 지역사회의 소득이전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 보호이다 (ILO, 2010: 7-8). SPF-I가 강조하는 사회적 보호 층 (SPF)의 등장 배경으로는 첫째, 국제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들 수 있다¹⁶⁾. 구체적으로 세계 인구의 6분의 1인 약 10억 정도가 하루 1달러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그 자체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SPF-I는 판단하고 있다¹⁷⁾. 둘째, 물리적 인프라 못지않게 인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 훈련, 건강 보장을 위한 사회적 보호 투자는 당사자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시키며 이는 공식영역에의 참여 및 납세 가능 영역에 취업의 길

14) 이의 자세한 사항은 심창학, 2010: 106-110을 참조.

15) 엄밀히 말하면 SPF-initiative는 UN의 주도하에 조직된 국제노력의 결과로서 ILO는 참여 기구의 하나이다. 이 조직에는 UN 산하기구, ILO, World Bank를 비롯하여 30여 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16) 이하 SPF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사이트의 내용에 바탕을 둔 것임 (<http://www.socialsecurityextension.org/gimi/gess/ShowTheme.do?tid=1321>).

17) 예컨대, ILO의 2010/2011년 세계사회보장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보험제도가 아예 없는 국가가 조사 대상의 58%인 106개 국가에 달함 (ILO,2010 :66).

이 열릴 수 있는 단초가 되며 결국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 구축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SPF-I가 제시하는 SPF는 아래 [그림 II-1]에서처럼 국가별 사회보호체계의 1층을 의미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SPF가 법정 사회보험 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는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수준의 보호가 바로 SPF임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SPF의 구축이 사회보험 등 개별 국가의 기존 사회적 보호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 사회적 보호 제도는 유지된 상태에서 적용대상 혹은 적용 영역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SPF인 것이다. SPF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한 기본 수준의 증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가능케 하는 토대의 구축에 있다. 이를 위해 SPF-I는 두가지 측면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선 수평적 측면의 실행은 아래 [그림 II-1]에서처럼 네가지 영역에서의 본질적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민에게 국가별로 정의된 기본적인 보건의 돌봄 서비스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SPF는 아동 소득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별로 설정된 빈곤선 수준에 있는 모든 아동을 위해서 영양, 교육 및 돌봄에의 접근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 및 아동 급여를 통한 소득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 급여의 강조는 교육에의 접근 촉진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세대간 빈곤 단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실업자와 노동 가능 빈민 등 경제활동인구집단에 대해서는 사회부조, 사회이전체계 혹은 고용체계를 통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별로 정의된 빈곤선 수준 이하에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II-1] SPF의 개관과 구성 요소

임의보험		
법정사회보험-기여금 납부자 대상 사회보장 급여		
SPF: 4가지 기본 보장		
1.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적 보건 돌봄 접근		
2. 아동 소득 보장	3. 실업자와 빈민 지원	4. 노령 및 장애인 소득보장

출처: <http://www.socialsecurityextension.org/gimi/gess/ShowTheme.do?tid=2505>

수평적 측면의 실행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국가별 용어이다. 이는 SPF-I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개별국가의 상황을 존중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인권의 사회구성체적 관점만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SPF-I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수직적 실행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의 지향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데 이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협약 102조를 비롯한 사회보장 기준과 관련된 협약 및 권고문이다. 이와 같이 SPF-I는 수평적으로는 포괄적, 수직적으로는 점진적 상승의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구체적 사례로서 본 연구가 SPF-I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ILO 등 국제기구의 인권 관점에 바탕을 둔 사회적 보호의 개선 노력은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권고(recommendation)는 연성법으로서 개별국가에 대한 강제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 한편, 협약(convention)은 경성법으로서 당사국에게 권리와 동시에 의무가 주어지는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국제법이다. 하지만 이 역시 개별국가의 비준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비준국가가 협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국제기구의 사법적 재판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전광석, 1998:357-35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의 가시적 노력은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입안하는 개별 국가에게 가이드라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¹⁸⁾. 뿐만 아니라 세계화, 다문화 사회의 등장 등 최근의 흐름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보호의 지향점은 개별국가에게 방향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SPF은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인권기반 사회복지정책 사례 2: 프랑스의 대항적 권리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가 프로그램 혹은 정책을 명시한 것에 불과한 설(프로그램 규정설) 혹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권리(추상적 권리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한국의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 재판 사례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입

18) 예컨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2007년)은 2006년 UN이 채택한 장애인 권리 협약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

증된 바 있다. 정진경(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구체적 제도의 시행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⁹⁾. 이는 사회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프랑스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항적 권리 (le droit opposable)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²⁰⁾. 이는 대항성(opposabilité)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즉 시민의 권리 자체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항할 수 있는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가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제공받은 급여 혹은 서비스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항적 권리이다. 특정 권리가 대항적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곧 국가의 본질적인 의무 발생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항적 권리 인정 여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프랑스의 사회권 영역 중 대항적 권리로 인정되는 것은 교육권, 건강권 그리고 최근의 주거권이다. 즉 입학을 거절당했을 때 이의 제기 및 소송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국적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보편적 의료 시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다²¹⁾. 그리고 많은 논쟁을 거쳐 2007년 대항적 권리로 인정된 권리가 바로 거주권이다. 인정되기 20여년 전부터 논쟁이 시작된 거주권의 대항적 권리 인정의 배경으로는 첫째, 주거정책의 실패를 들 수 있다. 약 300백만명에 달하는 열악한 환경의 거주자 혹은 노숙인 그리고 이의 증가 추세, 공공 임대 주택의 과밀성, 장기간 대기 그리고 열악한 환경 등이 실패의 전형적 사례로 지적되었다. 둘째, 주거의 공간적 분리에 대한 반발을 들 수 있다. 즉, 사회적 한계 집단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건축 자유화 조치는 공간적 분리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 보호주의로 인한 공공 임대 주택 비율(20%)의 무시 등의 조치

19) 이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 판례 62건 중 40건이 요건 미충족으로 아예 재판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각하), 22건 중 2건만이 행정부 및 입법부의 행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았다.

20) 이하 내용은 정부 기구인 사회적 취약 집단의 주거를 위한 고등 위원회의 홈페이지 자료에 바탕을 둔 것임. (<http://www.hclpd.gouv.fr/un-droit-opposable-qui-est-ce-que-c-a32.html>).

21) 2000년에 도입된 보편적 의료보장제도(CMU)는 바로 이에 바탕을 둔 것임.

는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행동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결국 당시 프랑스 정부 및 의회로 하여금 주거권이 대항적 권리임을 인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거권이 대항적 권리로 인정되게 됨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 신청자 혹은 관련 증명서 소지자는 조정위(une commission de médiation)에게 주거시설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²²⁾. 조정위는 심사를 통해 도지사에게 신청자의 상황에 적합한 주거 형태 (예: 일반주거, 임시 주거, 기숙사...)를 통지한다. 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거주 제안을 못 받는 경우 신청자는 행정법원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의 대항적 권리 개념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사회권이 지니고 있는 권리의 모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대항적 권리에는 인권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즉 사회권에 바탕을 둔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이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쟁점의 대상인 것이다. 셋째, 이의 연장선 상에서 대항적 권리 개념은 제도화·정책화 과정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인권개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권기반 사회복지정책 사례 3: 유엔인권고등판문관실(OHCHR)의 인권기반 빈곤감소 전략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본 연구는 현행 사회복지와의 비교 관점에서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차별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빈곤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빈곤은 사회복지학의 전통적인 사회문제임과 동시에 현재진행형이다. 과도단순(over-simplification)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빈곤감소를 위한 접근방법은 다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빈곤의 개념 정의 및 빈곤감소전략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첫째, 빈곤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방법이다. 여기서는 생활수준의 관점에서 빈곤을 정의하고 있다(P. Spicker, 2007: 232-233). 구체적으로 생활수준이 일정수준이하이거나(절대적 빈곤), 여타 집단보다 낮은 경우(상대적 빈곤)에 빈곤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된 생활수준의 척도로서 소득, 소비 혹은 부가 사용되기 때문에 빈곤의 경제적 정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빈곤집단의 탈빈곤을 위한 소득보장이 빈곤감소전략의 핵심에

22) 2008년 1월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신청자는 약 300,000명에 달함.

있다. 빈곤률, 빈곤집 등의 개념이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는 것 역시 바로 이에 기인한 것이다. 빈곤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전략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일반화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사회적 배제 개념에 바탕을 둔 빈곤접근방법을 들 수 있다.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접근방법으로서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동태적 성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 주거, 노동시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빈곤을 가져오는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빈곤 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소득보장이 아니라 빈곤을 가져오는 사회적 배제 현상의 예방 및 해소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심창학, 2001). 이 접근방법의 다차원적, 동태적 성격은 일차원적, 정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첫 번째 접근방법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접근방법 역시 빈곤 자체의 정의는 경제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기반 빈곤접근방법이다. 현재 UN 등 국제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접근방법으로 빈곤의 정의 및 감소 전략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빈곤접근방법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UN 산하 사무국 중 유엔인권고등판문관실(OHCHR)²³⁾의 공문서에서 나타나는 인권기반 빈곤접근방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⁴⁾.

첫째, 빈곤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방법은 빈곤을 정의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 즉 인권의 관점에서 적절한 영향을 섭취하고, 건강하게 살며,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과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이 기본적인 역량을 누릴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부정된 것이 바로 빈곤이라는 것이다(OHCHR, 2006: 4).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중요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기존 접근 방법과 달리 빈곤은 단순한 물질적 재화의 부족이 아니라 다차원적 성격을 지닌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OHCHR, 2008: 06). 둘째, 능력(capability) 개념과 빈곤을 연결 짓고 있다. 능력개념의 강조는 A. Sen의 능력접근방법에 바탕을 둔 것으로 최소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의 결핍이 바로 빈곤인 것이다(OHCHR, 2004: 7). 셋째, 빈곤과 권리를 연결짓고 있다. 단순한 재화의 부족이 빈곤이 아니라 식량과 건강, 정치 참여 등

23)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번역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한국의 인권기관들은 최고대 표회의실로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정진성·공석기·구정우, 2011: 365-366), 본 연구에서는 그냥 사용하기로 한다.

24) OHCHR, 2002; 2004; 2006(2008); 2008.

의 권리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가 빈곤인 것이다. “빈곤 감소와 인권이 두 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동일 프로젝트를 위한 상호 강화적 접근방법이다”라는 OHCHR의 주장은 바로 이에 바탕을 둔 것이다 (OHCHR, 2004: 3). 즉, 빈곤은 인권 보장을 통해 감소될 수 있으며 인권의 실행은 빈곤 감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OHCHR은 빈곤집단의 규모를 확인하기 전 단계로서 빈곤의 속성 확인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OHCHR, 2006: 19).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기존의 빈곤접근방법의 한계 즉 빈곤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경시한 채 빈곤집단의 규모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에 대한 하나의 경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기본적 능력과 관련되는 권리의 불완전성 혹은 능력 결핍’이 바로 빈곤의 속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OHCHR의 견해(OHCHR, 2006: 19)는 빈곤 집단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상호 관련되는 제 측면에서의²⁵⁾ 무권력상태(powerlessness)에 초점을 둔 세계은행 산하 빈곤연구팀의 관점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D. Narayan, 2000).

셋째, 이상의 빈곤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OHCHR은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ies, PRS)과 관련된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과 관련하여 기존의 빈곤접근방법과 달리 PRS는 당사자의 참여 보장을 통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 인권강화 혹은 능력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 임파워먼트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전혀 낯선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주목이 필요한 이유는 OHCHR의 임파워먼트는 인권 규범의 틀(human rights normative framework) 하에서의 실행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성, 비차별과 평등, 참여적 의사결정 원칙, 책무성 원칙, 권리의 상호인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권규범의 틀은 빈곤집단의 효과적인 임파워먼트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다 (OHCHR, 2006: 21-38). 이런 점은 임파워먼트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요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태에서 단지 사회복지실천가와 이용자 간의 관계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사회복지가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된다. 특히 OHCHR 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가 강조하는 권리 개념의 도입을 통한 당사자의 참여²⁶⁾는 인권기반 사회복지에의 관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성과라

25) 물질적 부족, 신체적 문제, 열악한 사회관계, 불안정, 좌절 및 분노.

26) 예컨대,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하는 Fredman(2009)은 참여성을 적극적 의무의 네 가지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다. Ife(2006)역시 임파워먼트 접근방법과 권리기반

고 할 수 있다.

넷째, OHCHR가 규정하고 있는 빈곤 개념의 다차원성은 빈곤감소전략의 다차원성으로 귀결된다. 구체적으로 OHCHR(2006)는 영역별 인권 보장 기준을 고려하면서 빈곤감소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II-2>와 같다.

<표 II-2> 인권 기반 빈곤 감소 전략

구분	지침	내용	
인권 기반 빈곤 감소 전략의 입안, 시행, 점검과정	지침 1	빈곤층 식별	
	지침 2	국가 및 국제 인권 구조	
	지침 3	평등 및 차별 금지	
	지침 4	목표설정, 벤치마크, 우선순위결정	
	지침 5	참여	
	지침 6	점검 및 책임성	
	지침 7	국제 원조 및 협력	
인권 기반 빈곤 감소 전략의 내용	지침 8	특정 인권 기준 통합	노동권
			적절한 음식을 섭취할 권리
			적절한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개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사법평등권
			정치적 권리 및 자유

출처: OHCHR, 2006.

위의 <표 II-2> 중 빈곤 개념의 다차원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지침 8이다. 노동권, 적절한 음식의 섭취권, 적절한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안전과 개인권리에 관한 권리, 사법 평등권, 정치적 권리 및 자유 등 다양한 측면을 빈곤

접근방법의 상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의 연결고리가 바로 당사자의 참여보장이다.

감소전략과 직결된 인권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권의 경우, 적절하면서도 생산적인 근로에의 접근은 빈곤 감소의 직접적인 역할과 관련된 권리이다. 또한 노동권의 보장은 빈곤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음식, 건강 및 주거와 같은 여타 영역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도구적인 성격의 권리이기도 하다(OHCHR, 2006: 45). 뿐만 아니라 빈곤문제의 해결에서 간과하기 쉬운 정치적 권리 및 자유 역시 고려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OHCHR이 강조하듯 정치적 권리 및 자유의 결여는 빈곤의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이기 때문이다(OHCHR, 2006: 80).

이처럼 빈곤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방법은 단순한 소득보장만으로는 빈곤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빈곤접근방법과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다차원성의 특징은 일정 부분 사회적 배제 관점을 통한 빈곤접근방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 극복 전략은 권리차원 보다는 분야별 지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OHCHR의 인권기반 접근방법은 국제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빈곤전략의 한 사례로서 개별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점, 특히 인권의 관점에서 빈곤을 바라볼 때 어떤 접근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인권기반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복지계의 인권교육과 인권교육과목 개설 현황 및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과 사회복지의 양면처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연계될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직은 인권전문직이라는 말처럼 사회복지현장 활동의 대부분은 인권 실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을 통한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계 즉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와 사회복지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예비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는 이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피

교육자에게 본래 없었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달시킴에 있어서 나타나는 교육의 기능을 고려할 때 (김대현, 2011:20)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될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여기서는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고자 한다. 세가지 부분의 확인이 시도될 것인데 현행 사회복지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교육이 첫 번째이며 현행 한국의 대학교 교과목에서 어느 정도 인권 혹은 인권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지에 관한 확인이 두 번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학과(전공)에 개설되어 있는 인권교과목의 추이 및 현황 그리고 이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의 인권교육이 현행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특히 세 번째에 속하는 인권교육은 사회복지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예비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와 관련된 것이다.

1) 현행 사회복지관련법과 인권교육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법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법이 지니고 있는 강제 규범 속성은 정책 및 제도의 영속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 및 의무 조항은 법률 주체의 관계를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킴에 있어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법 조항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의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현행 사회복지관련법에서 인권교육의 실행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 연구는 인터넷 검색 방법을 취했다. 검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현행 법령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법령명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법령의 조문 제목의 확인을 통해 인권 교육 용어의 사용 빈도에 대한 확인을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조문 내용에서 인권 교육 혹은 인권 교육을 지칭하는 문구의 사용 빈도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표 II-3>과 같다.

<표 II-3> 한국 법령의 인권교육규정 개관

구분	빈도	관련법령
법령명	0	없음
조문제목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정신보건법 및 시행규칙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조문내용	12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 여성가족부 직제시행규칙,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 진한 표시: 사회복지관련법

** 권리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법 중 일부를 소개하면 아동복지법, 장애인 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이 있음.

출처: http://www.lawnb.com/law/law_list.asp (2013년 9월 12일 검색)

위의 <표 II-3>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현행 법령 중 인권교육 용어가 법령명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컨대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 등의 명칭을 지닌 법령은 아직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현행 법령 중 조문 제목에서 인권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는 해당 조문 자체가 인권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행 법령 중 이에 해당되는 법령은 전부 5개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4개의 사회복지관련법이 바로 그것이다²⁷⁾.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26조의 조문제목은 인권교육과 홍보로서 인권교육 및 홍보의 목적 및 그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규칙 등 사회복지관련법이 이에 포함된다. 셋째, 조문의 내용에서 인권 교육 용어가 명시되어 있는 법령은 전부 10개이다. 이는 인권 교육이 해당 조문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에 관련되는 법령의 대부분은 직제를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될 뿐 인권 교육 자체가 핵심에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지 관련법에 인권 교육 용어가 조문 내용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정신보건법령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반

27) 한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관련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실정법을 100개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조원탁 외, 2013: 68-69의 <표 4-5>.

법으로서 여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인권 교육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권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의 방증이라 할 수 있다²⁸⁾.

이상의 점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개별 실정법을 중심으로 인권교육과 관련된 조문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정신보건법령과 인권교육

정신보건법령은 사회복지관련법 중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법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반영된 것이다. 아래 <표 II-4>에서처럼 정신보건법에 인권교육 조항이 명시된 것은 2008년 3월이다.

<표 II-4> 정신보건법의 인권교육관련 조문제목과 조문내용

인권교육(제6조의 2, 2008년 3월 21일 신설)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2008년 3월에 신설된 인권교육에 관한 조항은 정신보건 시설의 종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설치·운영자도 인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당시 제기되었던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법적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 II-5>

28) 한편 인권을 검색용어로 조사한 결과 법령명(9), 조문제목(31), 조문내용(245)으로 집계되어 인권교육에 비해 인권문제에 대한 법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인권에 관한 지자체의 관심 또한 갈수록 뜨겁다. 2009년 6월에 공포된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증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2개의 인권 관련조례 및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이 중 70개는 2013년에 공포되었다.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1&nwYn=1&query=%EC%9D%B8%EA%B6%8C&x=23&y=19#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년 11월 11일 검색).

는 시설유형별 시설 종사자를 의무교육대상과 권장교육대상을 구분한 것이다.

〈표 II-5〉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대상의 구분 (종사자)

구분	의무교육대상	권장교육대상
정신의료기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원무·행정·관리 전담직원	식당·청소·옹역·작업 직원 및 학생·실습생
정신요양시설	전체시설직원	학생·실습생·옹역직원
사회복지시설		

출처: <http://www.hrp.or.kr/sub0202.php>

한편 인권교육의 구체적 실행에 대해서는 부령의 형태로 위임하고 있는데 아래 <표 II-6>은 부령 중 2009년 3월 신설된 관련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표 II-6〉 인권 교육 관련 정신 보건법 시행규칙 조문 제목과 조문내용

인권교육(제1조의 4, 2009.3.20 신설)
<p>①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처우개선·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p>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공립 정신병원 3.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p>③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3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2.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 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본조신설 2009.3.20] [[시행일 2009.3.22]]</p>

이와 같이 정신보건법은 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최초의 사회복지 관련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소정 이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4시간의 인권교육을 통해서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어느 정도 제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1조의 4의 ①항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교육의 내용은 많은 토론이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4시간의 소정이수시간 규정은 형식적인 인권 교육 실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 다름없다. 둘째,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교육참여 불이행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불이행에 대해서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소속 시설 혹은 시설장에 대한 어떤 벌칙 조항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관련 조항 자체는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임의규정의 성격에 더 부합됨을 의미한다²⁹⁾.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과 인권교육

사회복지관련법 중 인권교육에 관한 조항이 두 번째로 명시된 법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이다. 아래 <표 II-7>은 2011년 6월에 제정된 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교육 관련 조문을 발췌한 것이다.

<표 II-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인권교육 관련 조문제목과 조문내용

인권교육(제20조)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1년 6월 7일 신규 제정

29) 한편, 의무교육 이수를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평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평가에서 인권항목에 인권교육 이수 여부를 점수화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10년부터 복지부·지자체 합동점검대상기관 선정 기준에 인권교육 이수 여부를 포함시키고 있다.

IMF 체제를 전후하여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노숙인 시설과 유사한 성격의 부랑인 시설이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 복지시설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간주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인권 문제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닌 것이다³⁰⁾. 이런 측면에서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관련 조항의 등장은 그동안 인권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한국사회 변화된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행은 아래 <표 II-8>과 같이 2012년에 제정된 시행규칙에 그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표 II-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인권관련 조문제목과 조문내용**

인권교육의 실시(제23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2.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 2012년 6월 8일 신규제정

정신보건법과의 비교 관점에서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게 부과되는 인권교육 이수 소정시간은 최소 4시간의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점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 II-9>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2013년도 인권교육 일정에 관한 것이다.

30) 2011년 6월 이후 부랑인 시설 용어는 사라지고 노숙인 시설의 범주에 포함됨. 노숙인 시설은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구분되며, 노숙인복지시설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가 있음.

〈표 II-9〉 2013년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관

과정명	종사자 의무교육 과정 (4시간)	신규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1박2일)
추진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교육대상	노숙인시설의 모든 종사자 ※ 제외대상: 노숙인분야 강사양성과정, 신규종사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수료자	노숙인 분야 신규 종사자 ※ “신규 종사자”라 함은 2012. 1. 1. 이후 노숙인분야에 입문한 종사자 ※ 취사원등 기능업무신규종사자는 의무교육(4시간)을 수강하시기 바람
교육인원	회기당 평균 55명	회기당 50명씩
교육시간	4시간	1박 2일 (14시간)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 2013년도 3월~2013년도 11월 까지 * 상세일정 및 장소: 다음페이지 별도 첨부	- 1기: 8월 1일~2일 - 2기: 10월 1일~2일
	① 서울, 인천, 경기권 : 7~8월 ② 부산, 울산, 경남권 : 8월 (장소섭외 중 추후 공지) ③ 대구, 경북권 : 11월 중순(장소섭외 중 추후 공지) ④ 대전, 충청권 : 3월, 6월 _6.3.까지 접수 완료필 ⑤ 광주, 전라권 : 6월~7월 _6.3.까지 접수 완료필 ⑥ 강원권 : 9월 ⑦ 제주권 :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충주 건설경영연수원)
신청기간	- 2013년 5월 27일~6월 14일 까지 회기당 선착순 마감 * 단, 전라권과 충청권에서 교육 받으실 분들은 6월 3일까지 접수 완료 필	
신청방법	상시적으로 교육 이수 확인이 용이하도록 인터넷(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 개별 신청 시스템 구축 ①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humanfront/index.jsp) 개인별 회원가입(반드시 직업군과 직종 입력) → ② 수강신청 → ③ 교육과정 (일정확인 후 해당 차수 과정명 “노숙인분야.....”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_ ★개인별 신청만 가능함★ *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대상자 일괄승인, 교육생은 소집교육 후 1주일 이후부터 수료 확인 및 수료증 출력 상시 가능. 단, 신규종사자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은 각 시설에서 해당 협회와 협의 후 인터넷 신청 및 시설별 참가신청서 제출.	
기타	- 참가비 무료 - 교육 이수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교육생 명단 일괄 통보	
접수 및 안내	-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humanfront/index.jsp) -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Tel) 02.2125.9882 / zeus@nhrc.go.kr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Tel) 02.702.6669 Fax) 02.6499.0882 E-mail) sun1006@kawih.or.kr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Tel) 02.713.3698 Fax) 02.711.3698 E-mail) yeunsiljoo@naver.com 전국족방협의회 Tel) 02.778.1290 Fax) 02.757.4136 E-mail) jeonikhyung@hanmail.net	

출처: <http://www.kawiv.or.kr/src/sub11.php>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2013년 9월 12일 검색)에서 발췌.

(3) 사회복지사업법령과 인권교육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다. 1970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인권교육이 조문 내용으로 명시된 것은 2012년 3월의 법 개정을 통해서이다. 2011년 9월 개봉된 영화 도가니에서 나타난 인권침해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사회복지계는 서명, 집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던 것이다³¹⁾.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중 인권교육과 직결되는 조항은 3개이다. 이의 자세한 내용을 신규 조항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제4조로서 아래 <표 II-10>처럼 인권용어가 조문제목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해당 조항 자체가 인권문제에 대한 조항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10>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신규 비교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2012년 1월 26일 신설 혹은 개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8.5]]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8.5]]

31) 인권 교육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공 및 관리 감독의 강화의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일정 비율이상의 외부인사의 추천 및 선임의 의무화, 임원 선임 조건 강화, 성폭력 범죄자의 시설의 운영 및 채용 금지, 불법행위를 자행한 임원에 대한 시·도 지사의 직무 정지 및 해임명령권 부여, 법인설립허가 취소 및 시설 폐쇄 명령에 관한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2012년 1월 26일 신설 혹은 개정)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8.5]]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8.5]] [전문개정 2011.8.4] [본조제목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 ①항 개정 / ⑥항~⑨항 신설

기존 조항이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새로운 조항은 이를 세분화, 구체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개정조항인 제1항은 인권침해 예방과 차별 금지 그리고 인권 옹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설된 4개 항 중 인권 교육에 관한 것은 6항으로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인권의 결합뿐만 아니라 인권 교육의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제10조와 13조는 인권 교육의 대상자와 그 성격을 명시하고 있는 데 먼저 제10조의 신규 조항은 아래 <표 II-11>과 같다.

<표 II-11>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신규 비교

제10조 (지도·훈련)	제10조 (지도·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① 항 개정

기존 조항의 개정 성격을 띠고 있는 제10조 제1항이 바로 인권교육에 관한 것으로 사회복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인권교육에 필요한 지도와 훈련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10조는 인권교육의 대상자를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무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의 형태로 명시되어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인권교육이 행해지는 교육의 성격과 대상자를 좀 더 세분화한 조항이 제13조로서 이의 신규 조항은 아래 <표 II-12>와 같다.

<표 II-12>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신규 비교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 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 ②항 개정

개정 제2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가 인권교육의 주된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 혹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우는 반드시 인권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서 강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아래 <표 II-13>처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기존에 없던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를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1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신규 비교

제5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제5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 보호 ,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8.3]

* ④항 개정.

이에 따라 현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아래 <표 II-14>처럼 연간 8시간 이상, 2개의 필수영역과 5개의 선택 영역으로 나누어져 실시되고 있는데 이 중 사회복지인권은 선택영역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표 II-1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보수교육대상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관리운영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이수시간	연간8시간이상 (필수 영역 2개 중 1개 영역 이상 1평점 이상 필히 이수)	
보수교육내용	필수영역 (2개영역)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선택영역 (5개영역)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사회복지인권 / 특별분야

출처: <http://edu.welfare.net/> (2013년 9월 10일 검색)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한 인권교육 조문의 명시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자체가 지니고 있는 법체계적 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체계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여타 실정법을 구속하는 일반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관심은 하위 법률의 제·개정 시 나타날 수 있는 관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둘째, 인권 교육 적용 대상자의 광범위성이 동 법의 개정을 통해서 관철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2개의 실정법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적용 대상의 광범위성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인권이 포함된 보수교육과 관련된 제재조치 규정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동법 제55조는 제1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3조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혹은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100만원),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만원)가 처해지게 된다. 이러한 제재조치 규정은 정신보건법이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없는 조항으로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강행규정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최소 8시간에 불과한 보수교육이수시간, 사회복지인권이 필수영역이 아닌 선택영역의 하나인 점은 인권감수성 향상의 관점에서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와 인권교육

1998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도입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의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성장에 따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책무성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배경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이다(황성철 외, 2009: 362-363).

따라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최소 1회이상 평가를 받도록 법제화되었으며 1999년 이후 매년 3~4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제1차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로서 총 12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제1차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혹은 실시 예정인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추진 상황은 아래 <표 II-15>와 같다.

<표 II-15> 연도별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상황

평가연도		평가대상시설
1차	1999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 평가지표개발
	2000	아동영아시설, 노인요양시설, 여성임소시설, 정신지체장애인시설, 부랑인시설, 사회복지관(시·도 평가)
	2001	노인양로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시·도 평가)

32) 정신보건법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의 하위법(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해당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재조치가 적용됨.

평가연도		평가대상시설
2차	2002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노인복지회관(시·도평가), *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부랑인, 정신요양,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개발
	2003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시·도 평가), 모자복지시설(시·도 평가) *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개발
	2004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시·도 평가)
3차	2005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회관 평가지표개발
	2006	사회복지관, 노인생활시설, 노인복지회관
	2007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개발
4차	2008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2009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0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5차	2011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부랑인시설
	2012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3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차	2014(예정)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출처: 황성철 외, 2009: 364와 사회복지시설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http://www.cswe.co.kr/board/data/list.do?bd_gb=data&bd_cd=2&bd_item=0&po_item_gb=data2, 2013년 11월 12일 검색)

한편,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지니고 있는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대상 시설의 입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한 평가대상 시설의 이미지 변화 여부 및 정도, 이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의 수혜 여부는 이의 핵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평가지표의 구성은 평가대상 시설의 초미의 관심 사안이다. 평가지표와 관련된 공청회가 개최될 때마다 평가대상 시설의 관심이 뜨거운 것 역시 평가지표의 구성 자체가 평가결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에 반영되어 있는 인권, 특히 인권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기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판단된다.

먼저 평가해당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지표는 아래 <표 II-16>과 같다.

**〈표 II -16〉 2014년 사회복지시설평가해당기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공통 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시설 및 환경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위생상태의 적절성
	A3 안전관리
재정 및 조직 운영	B1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비율
	B2 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B3 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후원금 비율
	B4 기관의 미션과 비전
	B5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B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B7 회계의 투명성
인적자원관리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총원율
	C2 전체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 직원의 이(퇴)직률
	C4 직원의 외부교육참여
	C5 직원 교육 활동비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C7 시설장의 전문성
	C8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C9 업무분장의 적절성
	C10 직원인사평가
	C11 직원교육
	C12 신입직원교육
	C13 직원의 고충처리
	C14 직원복지
	C15 직원대상수퍼비전
이용자의 권리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지역사회관계	F1 자원봉사자의 활용
	F2 외부자원개발
	F3 자원봉사자관리
	F4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5 홍보
	F6 실습교육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2013. 『201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6.

평가대상시설의 성격에 따라 일정부분 차이도 존재하지만 평가 지표의 대부분은 크게 5~6개의 평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통적으로 보이는 평가 영역은 위의 <표 II-16>처럼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자원관리, 이용자(혹은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5개 평가 영역이다. 이에 사회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영역이 별도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평가 지표 중 인권문제가 반영되어 있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이용자 (혹은 생활인)의 권리 영역(E)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아래 <표 II-17>처럼 인권보장노력항목이 이의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17>은 최근 3년간 평가해당기관의 평가지표에서 확인가능한 인권 및 인권교육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 -17>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의 인권(교육)반영 현황

평가대상 시설	평가대상 연도	인권평가영역	인권평가항목	인권교육평가내용
장애인복지관	2014	E. 이용자의권리	이용자의 인권보장(E3)	인권교육계획 및 실행 (직원 및 이용자대상, 연 1회 이상)
정신요양시설	2014	E. 생활인의권리	생활인의 인권보장(E3)	인권교육계획 및 실행 (직원 및 이용자대상, 연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2014	E.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의 인권보장노력 (E3)	인권교육계획 및 실행 (직원 및 이용자대상, 연 1회 이상)
아동복지시설	2013	E. 아동의 권리	아동의 인권보장 노력 (E3)	인권교육계획 및 실행 (직원 및 아동대상, 연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2013	E.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의 인권보장노력 (E3)	인권교육계획 및 실행 (직원 및 이용자대상, 연 1회 이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3	E.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의 인권보장노력 (E3)	인권교육계획 및 실행 (직원 및 이용자대상, 연 1회 이상)
사회복지관	2012	E. 이용자의 권리	서비스정보제공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E2)	인권, 권리교육 시행 (이용자 대상, 연 1회)
노인양로시설	2012		생활인 및 직원인권보호 (E13)	정기적인권교육실시여부 (생활인 및 직원 대상)
노인복지관	2012	E. 이용자의 권리	서비스정보제공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E 3)	인권, 권리교육 시행 (이용자 대상, 연 1회)

평가대상 시설	평가대상 연도	인권평가영역	인권평가항목	인권교육평가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2	E. 생활인의 권리	시설정보제공노력(E1) ~ 생활인의고충처리(E7)	없음
부랑인복지시설	2011	E. 생활인의 권리	인권의 존중(E3)	인권교육계획 및 실행 (생활인, 직원대상)

출처: 평가대상시설 평가지표자료

(http://www.cswe.co.kr/board/data/list.do?bd_gb=data&bd_cd=2&bd_item=0&po_item_gb=data2, 2013년 11월 12일 검색)

위의 <표 II-17>처럼 2011년 이후에 실시된 평가 대상 시설 11개 평가 지표는 공히 인권 영역과 인권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생활인의 인권보장을 확인하는 평가 지표는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이의 구체적 평가 내용은 네 가지이다³³⁾. 배점 방식은 네가지 평가 내용 전부 해당 사항이면 우수(4)이며 양호(3), 보통(2), 미흡(1)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한편, 인권교육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평가내용의 ③과 ④이다. 위의 <표 II-17>처럼 평가대상시설은 직원 및 생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계획이 있는지와 이를 연 1회 이상 (혹은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조사 대상 시설 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평가 지표는 인권교육에 관한 평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인권교육계획 및 시행 여부가 평가대상 시설 평가 지표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한계가 발견되기도 한다. 첫째, 인권교육 대상자가 이용자에 국한되어 있는 시설이 있음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인권교육의 최소 시행 횟수가 너무 적거나 (보통 연 1회) 아예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최소이수시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연 1회의 인권 교육 시행은

33) ①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있다 ② ‘인권진정함’을 생활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③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연 1회이상 실행되고 있다 ④생활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연 1회이상 실행되고 있다.

인권감수성 향상을 가져오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평가 지표라 할 수 있다.

3) 현행 대학교 교과목과 인권교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나름대로의 의의 못지않게 한계 또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는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이 더욱 더 절실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 대학교 교과목에 인권 요소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를 통해 대학교 인권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측에서 제출한 인권 관련교과목 목록과 강의계획서 검토를 통해 ‘인권관련교과목³⁴⁾’과 ‘인권교과목³⁵⁾’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개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2012년도의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정책교육국·인권교육과, 2012). 먼저 인권관련교과목의 조사결과이다.

첫째, 306개의 회신대학 중 개설대학은 132개로 개설비율은 43%이며 개설 학교당 3.97개의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국공립대학교의 개설비율은 56%로서 41%인 사립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개설교과목 수 역시 6.32: 3.34개의 비율로 국공립대학교가 높다.

둘째, 학위 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학부과정(68%), 대학원(31%), 평생교육원(1%)의 비율로 개설되어 학부과정에 더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학부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해석의 신중성이 요구된다.

셋째, 교과목 성격별로는 선택교과(88%)가 필수교과(12%)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교양이나 필수 모두를 선택화 하는 대학교육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이어서 살펴본 인권교과목 개설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34) 인권관련교과목은 1주차라도 인권관련내용(권리, 차별, 관련 조약)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

35) 인권교과목은 교과목 전체가 인권내용을 주제로 하는 교과목.

첫째, 306개의 회신대학 중 개설대학은 72개로 개설비율은 24%이며 개설 학교당 3.63개의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국공립대학교의 개설비율은 44%로서 23%인 사립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개설교과목 수 역시 4.85: 2.78개의 비율로 국공립대학교가 높다.

둘째, 학위 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학부과정(57%), 대학원(41%), 평생교육원(2%)의 비율로 개설되어 학부과정에 더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권관련교과목에 비해서는 대학원 개설 교과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차후에 살펴보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 개설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61개의 인권교과목 중 100개가 넘는 교과목의 실러버스를 취합하여 책자로 발간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본 글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교 인권교육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아래 <표 II-18>은 119개의 인권교과목 실러버스를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표 II-18> 학위 과정별 인권교과목 개설 현황

과정	학과(전공)	성격	개설과목수	소계(비중, %)
일반대학원	법학과	전공선택	6	15(12.6)
		전공필수	1	
	사회학과	전공	2	
	아동청소년학과	전공선택	2	
	아동복지학과	전공선택	1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2	
	북한학과	전공선택	1	
전문·특수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선택	17	36(30.3)
		전공필수	3	
	법무대학원	(인권법) 전공선택	4	
	평생대학원	법학과 전공	3	
	교양교육원	교양선택	1	
	공공대학원	글로벌거버넌스 학과 전공선택	1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전공선택	2	
교육대학원	전공선택	1		

과정	학과(전공)	성격	개설과목수	소계(비중, %)
		초등사회교육전공 전공선택	1	
		청소년 교육, 상담 전공선택	1	
	국제대학원	국제 학과 전공선택	1	
학부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2	45(37.8)
	자율(유)전공학부	전공선택	2	
	법학과	교양선택	4	
		교양필수	1	
		전공선택	12	
		전공필수	2	
	법·경찰학과(경찰법학과)	전공선택	2	
	정책학과	전공필수	1	
	군경상담학과	전공선택	1	
	경찰행정학과	전공선택	1	
	사회학과	교양필수	1	
		교양선택	1	
		전공선택	4	
	철학과	전공	1	
	NGO학과	전공	2	
	국제 학부	전공선택	1	
	유엔 평화학과	전공선택	1	
	윤리교육과	전공	2	
사회복지학과(부)	전공선택	4		
학부 교양			23	23(19.3)
합계				119(100)

실러버스 모음집에 나오는 인권교과목이 전수조사 결과가 아님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II-18>을 통해 인권교과목 개설과 관련된 경향적 특징이 발견되는 것 같다. 첫째, 성격별로 필수교과목보다 선택교과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권관련교과목 개설현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대학 교육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과(전공)를 비롯하여 일부학과는 인권교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에 주의를 요한다. 둘째, 일반대학원보다 전문·특수대학원에서 인권교과목이 더 많

이 개설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각 대학원과정의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대학원은 인권교과목 개설이 해당학과의 선택사항인 반면 전문·특수대학원 중에는 설립 요건으로 인권교과목 개설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들 수 있다. 위의 <표 II-18>에서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권교과목을 전공 필수 혹은 선택 과목으로 개설 중이다. 셋째, 학부과정에서 인권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가 매우 다양하다.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사회학과 등 사회과학의 전통적인 학과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학과들도 교과목 개설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 경찰 등 치안유지와 관련된 학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인권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공간임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일부 전공 및 학과에서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부과정에서 인권교과목은 교양과목의 하나로 간주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실러버스 모음집에 수록되어 있는 인권교과목 중 20%에 해당하는 23개가 교양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강생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점이 있는 반면 인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 및 강의가 어려운 문제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아래 <표 II-19>은 실러버스 모음집에 수록되어 있는 인권교과목을 학문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교과목 개설의 차원에서 학문 혹은 전공 영역별 인권문제 관심 정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학문 영역과의 비교 관점에서 사회복지학의 현주소를 보여줄 것이다.

<표 II-19> 학문영역별 인권교과목개설 분포현황

학문(전공)영역	개설교과목 수	비중 (%)
법학*	56	58.3
정치외교학**	11	11.5
사회학	8	8.3
사회복지학***	7	7.3
그 외	14	14.6
합	96	100

* 법·경찰 포함;

** 북한학, 국제학부, 유엔평화학, NGO, 글로벌거버넌스 포함;

*** 아동복지학 포함

분석대상 실러버스 119개 중 교양과정의 교과목을 제외한 96개의 인권교과목의 학문영역별 분포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학 분야에서의 높은 관심도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총 56개의 인권교과목이 법학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과정에 개설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인권교과목개설과 관련된 대학교의 정책을 선도하는 학문 분야는 법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인권교과목 개설 분포를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뿐만 아니라 학부과정의 법학부(과) 그리고 일반대학원의 법학과까지 고루 퍼져 있음이 발견된다. 인권 실행의 토대임과 동시에 견인차인 법의 중요성이 새삼 확인되는 대목이다. 둘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 영역군은 정치외교학과 사회학이다. 전통적인 사회과학 학문분야로서 정치외교학은 국제문화와 인권, 인권과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인권과 법, 인권과 국제정치 등의 인권교과목이 개설 중이다. 한편, 사회학에서는 현대사회학과 인권, 인권사회학, 인권과 사회 등의 교과목을 개설 중에 있다. 정치외교학과와 사회학과에서 개설되는 인권교과목을 합치면 그 수는 전체 대비 약 20%를 차지한다. 셋째, 인권은 곧 사회복지라는 절대명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과를 통해 개설되어 있는 인권교과목 수는 총 7개로서 그 비중은 7%에 불과하다. 이는 아동복지학과 개설과목까지 합친 것으로 사회복지학과에만 한정한다면 학부과정 4개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과정 2개 등 총 6개이다. 2012년 기준, 한국 사회복지교육협회의 단체회원대학은 79개이다. 한편, 2008년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교육기관은 학부만 245개, 대학원은 183개이며 여기에 22개의 학점은행기관까지 합치면 총 461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실러버스 모음집이 사회복지교육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복지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인권교과목 수가 6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사회복지교육이 인권문제를 등한시켰거나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 틀림없다³⁷⁾. 이의 배경 및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³⁸⁾.

36) 구체적으로 2년제 대학(전문대학) 82개, 4년제 대학 163개,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 수는 194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통원·윤재영, 2011: 2의 <표 1>).

37) 이와 관련된 단순계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79개의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 등록 학교의 사회복지학과의 총개설과목은 약 2500개로 추산된다(학교당 30여개 과목*79개 학교). 이를 고려할 때 인권교과목 개설 비중은 0.2%~0.5%정도이다.

38) 이는 인권교육과목 개설전략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살펴보기로 한다.

4) 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을 통해서 본 인권교육

교과목 개설을 통한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의 관심은 두가지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권교과목의 개설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정의처럼 교과목 전체가 인권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예비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방안이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학과를 통해서 개설된 인권교과목의 수는 극히 적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둘째, 인권관련교과목의 개설이다. 이는 1주차라도 인권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목을 말한다. 예컨대 여성복지 교과목을 통해 인권관련내용이 1주차라도 다루고 있음이 확인되면 이는 인권관련 교과목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역시 인권감수성 향상의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인권교과목에 비해 그 효과성은 떨어질 것이다. 예컨대 인권관련교과목의 개설이 바로 인권 교육과 관련된 사회복지학과의 지배적인 경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지금부터는 방금 언급한 두가지 차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1) 사회복지학과 개설 인권교과목과 인권교육

인권교과목 개설에 대한 사회복지학과의 관심은 아직은 초보 단계이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권교과목 실러버스 모음집에 수록되어 있는 교과목 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교과목 실러버스 모음집에 수록되어 있는 인권교과목의 내용은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학과의 접근방법 및 주된 관심 영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7개의 개설교과목 중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영어강의 전공선택과목을 제외한 5개 교과목의 주별 강의 내용의 분석을 통해 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³⁹⁾. 아래 <표 II-20>은 5개 교과목의 과목 성격 및 주별 강의 내용을 주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39) 분석대상 교과목명은 사회복지윤리와 인권옹호,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와 인권, 인권과 복지(2개) 등이다.

〈표 II-20〉 사회복지학과 개설 인권교과목 개관

교과목명	사회복지윤리와 인권응용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권과 복지	사회복지와 인권	인권과 복지
개설 형태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전공선택	사회복지학 전공선택	사회복지학 전공선택	사회복지학 전공선택	교양선택
주별 강의 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윤리와 인권문제	인권과 사회복지관계	인권 기본개념의 이해	인권의 개념과 특성	인권과인권의역사
	사회복지와 인권이론, 비판	인권개념과 특성	인권의발전과역사	인권 내용과 구분	인권과 민주주의
	국제사회와 인권	인권과 가치	세계화 시대의 인권	인권과 가치	인권과 국가
	여성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실천과 인권	인권3세대	인권 실천방법	인권과 헌법관
	아동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전문직과 인권	인권관련국제조약	사회복지전문직과 인권	복지국가와 사회보장권
	청소년복지와 인권	국제사회와 인권	사회적약자집단	국제사회와 인권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접근
	노동복지와 인권	인권이슈에 대한 사회복지실천방법	관찰과제작성을 위한 개별상담 및 학습	아동청소년과 인권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실태와 옹호
	장애인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사의 딜레마	문화상대주의와 인권	노인인권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사례와 대응
	외국인이주자	아동, 청소년과 인권	욕구와 권리	여성인권	시민운동단체에 의한 인권옹호
	북한이탈주민인권	노인과 인권	인권과 의무	장애인과 인권	아동복지와 인권
	윤리와 인권실천	여성과 인권	윤리와 인권	다문화가족과 인권	청소년복지와 인권
		장애인과 인권	인권담론	빈곤과 인권	여성복지와 인권
		다문화가족과 인권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정의란 무엇인가	교정복지와 인권
		빈곤과 인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3: 122-126.

위의 <표 II-20>에서처럼 교과목명에 따라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파악하는 접근방법이 다르다. 예컨대, 인권관점에서 사회복지윤리 혹은 사회복지실천을 다루는 과목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나는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

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다루는 과목들은 인권문제에 대해 천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별로 나타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공통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아래 <표 II-21>은 주별 강의 내용 분석을 통해 나타난 5개의 교과목의 선호 주제를 파악한 것이다. 교과목명에 따른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는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의 지배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II-21> 사회복지학과 개설 인권교과목 주별 강의주제 분포

강의주제명	관련강의주제명	개설 과목수
인권담론	인권과 의무/정의란 무엇인가/인권과민주주의/ 인권과 국가/인권과 헌법관/욕구와 권리	5
여성복지와 인권	사회적약자집단과 인권	5
아동·청소년복지와 인권	사회적약자집단과 인권	5
국제사회와 인권	인권관련 국제조약	4
인권개념과 특성	문화상대주의와 인권	4
사회복지시설의 윤리와 인권문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실태	3
사회복지와 인권이론, 비판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접근/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3
인권과 가치		3
사회복지실천과 인권	인권실천방법/인권이슈에 대한 사회복지실천방법	3
인권 내용과 구분	인권3세대/세계화시대의 인권	3
노인과 인권	사회적약자집단과 인권	3
장애인복지와 인권	사회적약자집단과 인권	3
외국인이주자	다문화가족과 인권	3
윤리와 인권실천		2
사회복지전문직과 인권		2
빈곤과 인권		2
인권의발전과역사	인권과인권의역사	2
관찰과제작성을 위한 개별상담 및 학습	관찰과제발표 및 토론	2
복지국가와사회보장권		1

강의주제명	관련강의주제명	개설 과목수
시민운동단체에 의한 인권옹호		1
교정복지와 인권		1
노동복지와 인권		1
북한이탈주민인권		1
사회복지사의딜레마		1

위의 <표 II-21>처럼 개설 취지 및 교과목명과 무관하게 인권담론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목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권담론자체가 인권문제 접근의 토대임을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관련 주제가 학기 초가 아니라 학기말에 다루고 있는 교과목도 있다는 점이다. 인권교과목을 통해 두 번째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는 사회복지 대상자와 인권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여성, 노인, 아동 및 청소년 집단은 물론이거니와 다문화사회의 등장과 관련성이 높은 외국인 이주자 문제의 인권 기반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혹은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이 사회복지의 기본 속성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기존의 인권교과목은 사회복지실천 혹은 윤리 문제에 천착한 결과 사회복지의 거시적 측면과 인권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빈곤과 인권, 복지국가와 사회보장권, 시민운동과 인권, 노동복지와 인권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권교과목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아래 <표 II-22>처럼 강의 주제를 범주별 재배열을 통해 나타난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표 II-22> 사회복지학과 개설 인권교과목 강의 주제의 영역별 구성

범주	강의주제명	개설과목수	합(비중,%)
인권 이해	인권담론	5	19(35.0)
	인권개념과 특성	4	
	인권과 가치	3	
	인권 내용과 구분	3	

범주	강의주제명	개설과목수	합(비중,%)
	인권의발전과 역사	2	
	국제사회와 인권	4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와 인권이론, 비판	3	14(23.3)
	사회복지시설의 윤리와 인권문제	3	
	사회복지실천과 인권	3	
	윤리와 인권실천	2	
	사회복지전문직과 인권	2	
	사회복지사의 딜레마	1	
인권과 분야별 사회복지	노인복지와 인권	3	18(30.0)
	아동·청소년복지와 인권	5	
	장애인복지와 인권	3	
	여성복지와 인권	5	
	외국인 이주자	3	
	교정복지와 인권	1	
	북한이탈주민인권	1	
기타	노동복지와 인권	1	7(11.7)
	빈곤과인권	2	
	관찰과 제작성을 위한 개별상담 및 학습	2	
	복지국가와 사회보장권	1	
	시민운동단체에 의한 인권옹호	1	
합			60(100)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복지학과 개설 인권교과목 개설의 특징 및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설된 인권교과목 수가 절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별 개설된 인권교과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과 개설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분석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둘째, 내용면에서 사회복지학과 개설 인권교과목은 인권담론, 사회복지실천과 인권 그리고 분야별 사회복지와 인권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미시적 사회복지실천방법과 인권간의 선택적 친화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거시적 사회복지실천 방법 즉 사회정책과 인권간의

연계는 현행 사회복지학계의 관심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권교과목 개선 전략 수립 및 방향을 설정할 때 고려가 필요한 대목이다.

(2) 사회복지학과 개설 인권관련교과목과 인권교육

사회복지학과와 인권교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인권관련교과목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학기 중 1주차라도 인권관련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관련교과목의 개설 현황 및 추이 분석을 통해서 인권 교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 및 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전수 조사가 아닌 대안적 조사 방법으로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가 2년에 한번 꼴로 발간되는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고시에 응시, 합격해야 한다. 따라서 과목별 시험 범위의 사전 조율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한 바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에 수록되어 있는 교과목 별 강의내용은 의무사항은 아니라 권장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모든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가 반드시 지침서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고시 대비를 위해서는 지침서 내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정기적 개정 작업을 거치고 있는 지침서 내용은 사회복지학 교육의 현재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침서 내용 분석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침서 내용의 현황 및 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10년과 2012년에 발간된 두 개의 지침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먼저 두 개 연도의 지침서에 수록되어 있는 사회복지학 교과목은 아래 <표 II-23>과 같다.

〈표 II-23〉 사회복지학 교과목 개관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

	2010	2012
성격	과목명	과목명
법정필수이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좌동
		좌동
법정선택과목 (20개)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좌동
비법정과목 (5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빈곤론, 복지국가론, 사례관리론, 다문화 사회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빈곤론, 복지국가론, 사례관리론, 다문화 사회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추가)

출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0 ; 2012.

위의 <표 II-23>의 내용 중 법정 과목 그리고 법정 과목의 필수·선택 구분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법령의 개정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한 부분임을 의미한다. 한편, 비법정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흐름을 고려하여 사회복지학과에의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교과목들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개설 권고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재량이 인정되는 유일한 범주라 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처럼 2010년 지침서에는 총 35개의 교과목이 수록되어 있는 반면 2012년 지침서에는 1개가 늘어나 수록되어 있는 교과목 수는 총 36개이다. 추가된 과목은 국제사회복지론으로 비법정과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회복지의 새로운 영역으로 국제사회복지에 대한 최근 관심 증대 및 교과목 지침서에 그 반영을 요구한 국제사회복지학계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이들 교과목 중 인권관련교과목 즉 1주차라도 인권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과목은 얼마나 되면 과목별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아래 <표 II-24>이다.

〈표 II-24〉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를 통해서 본 인권관련교과목의 추이

2010년		2012년	
교과목명	내용 (목차)	교과목명	내용(목차)
		사회복지실천론*	5. 사회복지실천과 다양성 2) 욕구와 인권
		사회복지정책론	5. 사회복지정책발달역사 속에서의 정책 이슈 6) 인권과 시민권
사회복지법제론	4. 사회복지법의권리 1) 인권, 시민권 및 사회복지권 8.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인권규약(A, B)	사회복지법제론	4. 사회복지법의권리 1) 인권, 시민권 및 사회복지권 8.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인권규약(A, B)
사회복지개론	12. 사회복지의 실천분야 II 5) 기타(군사회복지,... 인권과 사회복지,...)		
노인복지론	20. 노인과 인권 1) 노인인권의 의미와 기본 원칙 2) 노인인권의 문제점 3) 노인인권의 과제와 전망	노인복지론	20. 노인과 인권 1) 노인인권의 의미와 기본 원칙 2) 노인인권의 문제점 3) 노인인권의 과제와 전망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3. 사회복지의 주요가치들 1) 휴머니즘과 인권 6. 윤리적 갈등과 의사결정 3)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14. 사회복지윤리의 확장 2) 인권과 환경	사회복지윤리와철학	3. 사회복지의 주요가치들 1) 휴머니즘과 인권 14. 사회복지윤리의 확장 2) 인권과 환경
아동복지론	3. 아동의 권리 1) 아동의 권리와 국제아동 권리협약 2) 한국의 아동인권	아동복지론	3. 아동의 권리 1) 아동의권리와 아동복지 2) UN 아동권리협약 3) 한국의 아동인권
장애인복지	13. 장애인복지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 II 5) 차별금지과 인권	장애인복지론	13. 장애인복지 핵심 이슈 II 5) 차별금지과인권
정신보건사회복지론	5. 지역사회대상실천 2) 지역사회정신보건실천 (4) 정신장애인 인권과 권익 옹호	정신보건사회복지론	2. 정신보건사회복지와 인권 1) 정신보건사회복지가치와 윤리 2) 정신장애인의 인권 3) 사회적편견과차별 5. 지역사회대상실천 2) 지역사회정신보건실천 (4) 정신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

2010년		2012년	
교과목명	내용 (목차)	교과목명	내용(목차)
청소년복지론	7. 청소년과 긍정적 발달 1) 청소년인권 11. 청소년과 학업중단 1) 학교와 학생인권	청소년복지론	7. 청소년과 청소년개발 1) 청소년인권 11. 청소년과 학업 1) 학교와 학생인권
학교사회복지론	4. 학생에 대한 이해 2) 학생의 권리	학교사회복지론	4. 학생에 대한 이해 2) 학생의 권리
다문화사회복지론	6.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2) 결혼이민자의 실태 (인권 등 이슈 포함) 7. 이주노동자 1) 이주노동자 현황 (인권 등 이슈 포함)	다문화사회복지론	6.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2)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의 실태(인권 등이슈 포함) 7. 이주노동자 1) 이주노동자의 현황 (인권 등 이슈 포함)

* 굵은 글씨는 2012년 지침서의 새로운 내용임.

출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0 ; 2012.

<표 II-24>가 담고 있는 내용 중 2010년 지침서에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10년의 지침서에 수록되어 있는 인권교과목 수는 9개로서 전체 교과목 중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교과목 중 인권관련교과목이 4분의 1에 달하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인권교과목의 양상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둘째, 과목별 세부 사항 분석은 총량에서의 긍정적인 평가를 무색하게 만든다. 예컨대 9개 교과목 중 법정필수이수과목은 사회복지법제론과 사회복지개론 등 2개 과목에 불과하다. 게다가 2개 과목의 권장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이 여타 권리와 비교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거나 국제법 사례의 하나로 국제인권문건이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사회복지법제론). 한편 사회복지개론에서는 인권문제가 기타 사회복지 실천분야의 하나로 예시되고 있음에 지니지 않는다. 셋째, 인권관련교과목 중에서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과목은 사회복지실천, 분야별 사회복지과목이다. 7개 과목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 중 6개 과목은 법정선택과목이며 1개 과목은 비법정과목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위의 <표 II-24>중 노인복지론을 비롯한 6개 교과목은 학생들이 해당과목을 신청해야만 인권감수성 향상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과목들인 것이다. 한편 비법정과목인

다문화사회복지론은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과목이다. 과목마다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발견되는 대목이다.

한편, 2012년에 발간된 지침서 내용은 이러한 문제점이 일정부분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총 36개의 수록 교과목 중 인권관련교과목은 11개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0년의 25%에 비해 상승된 것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학계 관심 증대의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최근 2년 사이에 불거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반응적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양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 제고 측면이다. 예컨대 11개 교과목 중 3개는 사회복지사 취득에 필요한 법정필수이수과목인 것이다. 기존의 사회복지법제론 외에 사회복지 실천론과 사회복지정책론이 인권관련교과목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해당과목에서 인권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아직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가 사회복지교과목 전체를 아우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실천, 분야별 사회복지교과목이 사회복지학 교과목의 인권 관심을 대변하는 기존의 경향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8개의 법정 선택 과목 혹은 비법정 과목의 성격이 이의 대표적 사례로서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의 3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과목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선택 과목 중 인권문제에 대한 기존의 관심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과목이 있으니 정신보건사회복지론이 바로 그것이다.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반영이나 하듯이 2012년 지침서는 2주에 걸쳐 정신보건사회복지와 인권과의 관계에 대한 강의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2012년의 지침서는 2010년에 비해 예비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관련하여 양적 그리고 질적 측면에서의 의미 있는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장문건으로서의 지침서가 지니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와 동시에 인권관련교과목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지침서 내용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인권문제를 1주도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예비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의 실

질적인 실행도구로서 인권관련교과목 보다 인권교과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 개설 부진의 원인: 제도적 동형화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제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학 교과목에 나타나는 인권교육의 관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권관련교과목을 통한 관심 증대와는 달리 인권교과목의 개설은 매우 부진하며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인권교과목 개설 활성화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인권교과목 개설 부진의 원인부터 진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본 연구는 제도적 동형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주요 제도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제도가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개설 과목의 수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령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으로 2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급 자격기준은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II-25>와 같다.

<표 II-25>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및 학점(대학·전문대학의 경우)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위의 <표 II-25>에서처럼 1급 자격증 취득의 전제조건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비사회복지사는 10개의 필수과목과 4개 과목이상의 선택과목을 이수해야만 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사회복지학과는 적어도 14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14개의 전공 및 관련 과목 개설에 비해 인권교과목의 개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제도 시행의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개설 과목 현황과 제도적 동형화

위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제도가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과목 개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개설 과목 현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실질적으로 모든 대학의 사회복지학과가 14개 이상의 전공 및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상례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II-26>은 본 연구팀이 재직하고 있는 경상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의 교과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26>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2013년 기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목명	과목성격*	과목명	과목성격	과목명	과목성격	과목명	과목성격
사회복지개론	필수	사회복지실천론	필수	사회복지행정론	필수	사회복지현장실습	필수
사회문제론	선택	사회복지정책론	필수	사회복지 현장실습	필수	복지국가론	비법정 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필수	민간복지와 사회복지운동	비법정 과목	사회보장론	선택	사회복지 지도감독론	선택
사회복지발달사	선택	사회복지조사론	필수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필수	산업복지론	선택
		아동복지론	선택	노인복지론	선택	가족복지론	선택
		정신보건사회 복지론	선택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선택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선택
		지역사회복지론	필수	의료사회사업론	선택	학교사회사업론	선택
		자원봉사론	선택	사회복지법제	필수		
		사회복지자료 분석론	선택	여성복지론	선택		
		장애인복지론	선택	한국사회보장의 역사	비법정 과목		

* 사회복지사업법령 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법정필수 혹은 선택과목

위의 <표 II-26>에서처럼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관련조항을 기준으로 할 때 10개의 법정필수이수과목과 17개의 법정선택과목 그리고 3개의 비법정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법정 선택 과목의 개설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57%). 법정 필수 과목까지 포함하면 개설과목의 90%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비법정 과목의 개설 비중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10%).

개설과목 중 법정 과목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일단 예비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인권교과목 개설 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하지 못할 것 같다. 더 나아가서 개설과목 중 법정 선택 과목이 과도하게 많은 점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국가시험은 아래 <표 II-27>처럼 3개 과목군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27>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국가고시 시험과목 및 문제수

과목	영역	문항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60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90
사회복지정책과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90

위의 <표 II-27>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모호함에 주의가 필요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위의 <표 II-27>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예: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에 필요한 법정 필수 혹은 선택 과목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시험과 관련된 과목 혹은 영역을 지칭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⁴⁰⁾. 이는 법정선택과목이라 하더라도 강의 내용이 얼마든지 성격에 부합되는 영역의 시험문제로 출제될 수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정 필수 (혹은 선택)과목과 시험과목(혹은 영역)의 비밀치성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합격률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각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로 하여금 필수과목은 물론이거니와 선택과목 역시 가능한 많이 개설하게끔 만드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이를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의 관점에서 설명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배적인 모델로 유사해지려고 하거나 이에 순응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P. J. DiMaggio, W.W. Powell, 1983: 147-160; 심창학, 2007: 81).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역시 설립초기에는 기본 취지에 걸맞은 교과목 개설을 염두에 두었을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이라는 제도적 요인은 모든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의 교과목 개설 양상을 하나의 지배적인 모델로 수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의미에서 본 사례는 제도적 유형화의 여러 종류 중 법률적 규제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가능한 많은 법정 선택 과목의 이수를 통한 예비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라는 공식적인 명분과 사회복지사 시험이 지니고 있는 제도적 요인의 결합은 결국 사회복지학 교과목에 인권교과목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거의 원천봉쇄에 가까운 정도로 막고 있는 것이다.

40) 예컨대 <표 II-27>의 사회복지정책론은 <표 II-25>의 사회복지정책론과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것이 아님. 이는 사회복지법제(론)도 마찬가지임.

III

대학교 인권교육 해외사례

- | | |
|--------------------|----|
| 1. 사회복지 인권교육의 해외동향 | 71 |
| 2. 각국 대학의 인권교육 | 76 |

1. 사회복지 인권교육의 해외동향

1) 국제기구의 인권교육 관심 동향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것을 바라는 시민대중의 요구에 대한 국가 역할의 하나로서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선언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제1항)고 하면서,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의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켜야 한다”(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유엔은 1993년 6월 25일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내재된 권리이자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보장하는 수단인 교육권의 이행을 다룬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공통의 이해와 인식을 위한 국제 및 지역차원의 인권문서에서의 평화, 민주주의, 개발과 사회정의가 인권교육에 포함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인권교육에 대한 강조의 결과 “유엔인권교육 10년(1995~2004)”이 선포되었고, 후속 조치로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목표는 ① 인권문화 발전의 촉진 및 홍보, ② 국제조약에 근거한 인권교육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공동의 이해 증진, ③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관심의 보장, ④ 모든 관계자를 위한 공통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지침의 제시, ⑤ 모든 단계에서의 파트너십과 협력 증진, ⑥ 기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지원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해당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및 신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둔 제1차 프로그램(2005~2009)과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및 교원,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춘 제2차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특히 제2차 프로그램에서는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은 “국가당국으로부터 고등교육기

관으로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중등과정 이후에서의 모든 연구, 훈련, 조사연구를 위한 훈련과정”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 영역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교사, 사회복지사 및 의료와 법률 종사자의 훈련과 자격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제2차 프로그램 para. 16). 따라서 제2차 프로그램은 고등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정규교육체계 속에 인권교육과정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육에 대한 권리’(Rights to Education)를 실현하고자 의도하고 있다(제2차 프로그램, para. 17).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차 프로그램은 특히 다음의 다섯 분야, 즉 ① 정책 및 이행조치(제2차 프로그램, para. 24-25), ② 교육·학습과정 및 교구(제2차 프로그램, para. 27-28), ③ 조사연구(제2차 프로그램, para.29), ④ 학습 환경(제2차 프로그램, para. 30-31), 그리고 ⑤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의 교육 및 전문성 개발(제2차 프로그램, para. 32-33)에서 지원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끝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의 행위주체와 관련하여, 제2차 프로그램은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같은 정부부처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해 교육기관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제2차 프로그램, para. 34).

이와 같이 유엔이 각국 정부에 인권교육의 포괄적인 실시를 제안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적극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 역시 2012년에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였는데⁴¹⁾,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끝나는 2015년에 유엔에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국내·외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인권교육의 실시가 요청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장에서는 제2차 프로그램에 포함된 사회복지사의 교육

41)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은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인권단체의 의견, 공청회 및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27개 부처 및 기관이 함께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효과적으로 신장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이 사회 전반에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에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보호, 여성 장애인의 모성보호,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의 권리보호,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다문화 가정학생 맞춤형교육지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활성화, 국제인권 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67개 신규과제가 제시되었다. 특히 사형제, 입영 및 징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하였다(법무부, 2012: 2-5).

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차원에서의 인권교육의 실태를 몇몇 국가의 사례를 통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인권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옹호하기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일자리를 잃은 사람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의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이프(2001)는 다른 전문분야보다 사회복지직이 ‘인권전문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를 넘어서 인권 실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 외국 사회복지 관련 기구의 인권교육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권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과는 달리 대학에서 학문영역으로 인권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다. 대학 수준에서 인권을 학문영역으로 가장 활발하게 수용한 분야는 법학이었다. 미국의 경우 1971년에 13개의 로스쿨에서 인권문제를 교과목으로 채택한 이래, 1980년에는 20개, 그리고 1983년에는 46개 로스쿨이 인권관련 교과목을 채택하여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Lillich, 1983). 그 뒤를 이어 철학과 정치학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교과과정으로 수용했는데, 몇몇 정치학자들은 로스쿨이 인권교육을 선점한 것을 애석해 하기도 했다(Beetham, 1995; Forsythe, 1998). 특히, Beetham은 “인권이 법학연구의 주제로서 특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학이 인권연구의 주체로서 정당화되는 것을 회복하기란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Beetham, 1995: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 영역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느리지만 점차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Pritchard, 1989). 다음으로 인권교육에 기여한 학문영역은 교육학, 심리학, 정신병리학이었는데(Pritchard, 1989), 이러한 학문영역들은 인권교육을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인권교육이 이질적이며 다학문적 영역이 되었다(Martin, 1989: 421).

이처럼 다른 학문영역에서는 인권교육이 점차 활발히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인

권교육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어떠한 평가 작업도 수행되지 않았다(Steen and Mathiesen, 2005: 146). 당연하게도 인권의 철학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데, 인권센터(Centre for Human Rights)(1994; 5)는 “인권은 사회복지 이론, 가치, 윤리, 실제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인간욕구에 부합하는 권리들은 지지되고 육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사회복지 행동에 대한 정당화와 동기부여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들의 고취는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권위주의적 체제들 하에서 살고 있는 국가들에서 조차 사회복지의 통합적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인권과 복지의 밀접한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 교육에서 중요한 책무들 중 하나는 사회적 및 경제적 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계화된 집단들에 대한 전문적 동료로서 봉사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에서 사회적 및 경제적 정의에 대한 교육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사회복지의 전통적 개념에서 클라이언트의 타고난 존엄과 개인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인식인 인권의 하나로 옮겨가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복지를 배우는 학생들이 욕구로서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과 권리로서 그것을 인식하는 것 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권리의 수행은 책무의 문제인 반면, 욕구의 수행은 그들 클라이언트들의 상황 평가에서 인지된 구체화된 많은 선택들의 하나로서 학생들에 의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권은 사회복지사에게 욕구의 다면성과 사회복지실제와 사회생활의 다면적 수준들에서 그들의 표현을 연결하여 심도 있게 다루는 토대를 제공한다. 예로서, 인권의 문제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들의 이행을 인식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의 빈곤, 억압, 문화적 배제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개입하게 이끈다. 욕구에서 권리로의 이행에서 주장된 긴급성은 사회복지사가 실제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복지를 강제한다. 따라서 적당한 생활수준, 악명 높은 인종주의로부터의 자유, 혹은 지역사회 사회 구조들에의 포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 클라이언트의 권리들이 부여되는 곳에서 사람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직업적 임무의 바로 그 본질이 규정되고 사회복지사들은 근본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회복지 교육자들은 정책, 실제, 연구를 포함하는 모든

측면에서 인권과 전문직 간 냉혹한 연결에 점차적으로 민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IFSW, 1996). 국제사회복지사협회(IFSW)는 인권이 사회복지의 심장부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가와 사회복지대학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권훈련 매뉴얼(Human Rights Training Manual)을 제작하였다. 사회복지사는 인도주의와 민주적 이상에서 태어난 것으로 사회복지실천은 그 시작에서부터 인간의 욕구충족과 잠재력 및 자원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단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신적 문제를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을 이 매뉴얼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윤리, 이론 및 서비스 과정 전체에 걸쳐 인권을 고려해야 하며, 인간의 욕구에 반응하는 인권은 반드시 옹호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인권에 민감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질 때 사회복지실천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이해원 역, 2005).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이자 원조관계의 핵심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수용, 비심판적 태도, 비밀보장 등에는 인권의 원칙들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이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에 국제사회복지사협회의 “International Policy on Human Rights”에서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인권 실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IFSW, 2002; 김미옥 외, 2006).

〈표 III-1〉 IFSW의 사회복지실천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 원칙

- 모든 사람은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도덕적 배려로 정당화된다.
- 모든 개인은 자립(self-fulfillment)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화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개인은 사회의 안녕에 기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어떠한 형태의 사회이든지 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의 원칙에 대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훈련된 지식과 기술에 헌신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 사회복지사는 성, 연령, 장애, 인종, 사회계층, 종교, 언어, 정치적 신념, 성적 취향에 기초한 어떠한 차별 없이 가장 최선의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직은 인권전문직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전문가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기본적인 사회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확실하고도 충

분하게 관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복지전문직 종사자가 인권에 관하여 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해야만 하며, 인권감수성을 갖추고 인권관점에 근거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자원을 사정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때 사회복지실천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인권보장은 사회복지실천과정을 통해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사회복지실천은 인권에 민감할수록 더욱 전문적인 수준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아이프(2006)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 관점은 사회복지사들에게 별도의 행동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개별상담, 대화기법, 옹호와 지지, 정책개발,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미 하고 있는 업무에서 인권관점으로서의 사고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정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권의식을 갖춘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는 쉽게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육과정에서부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박태영, 2002). 즉,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내면화는 사회복지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각국 대학의 인권교육

1) 미국대학의 인권교육

미국 내에 소개하면서 사회사업교육협의회로부터 인가된 MSW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실태를 파악한 Steen and Mathiesen(2005)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대학교 MSW 프로그램에서 인권교육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교과과정에 편입되고 있다.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Vermont대학을 비롯한 몇몇 대학들은 사회사업프로그램에 인권을 폭넓고 다양한 핵심 교과과정에 편입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 Kean University, Spalding University, Springfield College, University of Minnesota at Twin Cities 등과 같은 대학들은 인권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MSW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대학에서 인권을 핵심 교과목으로 진입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로써, “Challenges in Human Rights: A Social Work Perspective(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Understanding Human

Rights: An Exercise Book(Sage Thousand Oak, 2006)”, “Social Work and Human Rights: A Foundation for Policy and Practice(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등의 저자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Elisabeth Reichert가 재직하고 있는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사회사업 대학의 경우도 인권을 명시한 교과목을 개설하기 보다는 ‘International Social Work’ 교과목에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국 대학들이 인권교과목을 MSW 프로그램의 주요 과목으로 진입시키지 못한 이유로 Dewees & Roche(2001)은 불가분성(indivisibility)의 국제 인권 원리와 미국의 정치 및 경제 전통과 조화되지 않는 점들, 보편성의 인권원리들과 확대되는 사회사업 가치들 간의 갈등, 인권분석의 정치적 행동 함의들과 이들이 강조하는 책무들 등을 들고 있다.

〈표 Ⅲ-2〉 미국 대학교 사회사업학부에서 제공되는 인권 내용을 가진 수와 코스들의 제목

대학	#	코스 타이틀
Adelphi U	1	사회사업에서 인권에 대한 억압, 다양성 및 투쟁 (Oppression, Diversity, and the Struggle for Human Rights in Social Work)
Cal State U at Sacramento	1	Advanced Policy
Grand Valley State U	1	Law, Ethics, and Social Welfare
Hunter College	1	Social Policy and Disabilities
Kean U	1	International Social Work Practice and Social Justice
Spalding U	1	Social Work in a Global Community
Springfield College	1	Human Rights
SUNY-Albany	1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Policy
U of Michigan	1	Policies and Services for Social Participation and Community Well-Being
U of Minnesota at Twin Cities	1	Global Perspectives on Social Welfare, Peace, and Justice
U of Nebraska at Omaha	1	Macro Intervention II
U of Vermont	8	Aging: A Strengths and Human Rights Perspective Social Work Practice I Social Work Practice II Social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I Social Welfare Policies and Service II Critical Applications of HBSE III Advanced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and Practice Advanced Social Work Research

출처: Steen and Mathiesen, 2005: 149.

Steen and Mathiesen(2005)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참고할 만한 사안은 미국 대학의 로스쿨에서의 인권교육이다. 미국 대학의 경우 인권교육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로스쿨의 경우 88%가 교과목 명칭 및 교과과정 설명에서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MSW 프로그램의 경우 단지 9%만 인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로스쿨의 경우 인권교과목들에 대한 중위 빈도가 MSW 프로그램들의 인권교과목들의 중위 빈도보다 무려 29배나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 대학들의 로스쿨과 MSW 프로그램에서의 인권교육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로스쿨에서의 인권교육

가. 하버드 로스쿨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 편성된 인권법관련 교과과정은 크게 아동옹호프로그램, 이주민과 인권, 차별과 평등, 인권발전과 인권운동, 국제적 차원의 인권보호 메카니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아동옹호프로그램(Children Advocacy Programme: ACP)에서는 ① 사회변화의 기술: 아동복지, 교육, 미성년 사법제도(정책워크숍), ② 아동, 가족, 국가(강의실 수업), ③ 아동옹호클리닉(실습), ④ 가족의 미래: 입양, 생식, 아동복지(세미나)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하버드 로스쿨에서는 4개 강좌 모두를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①과②를 수강한 경우 아동옹호클리닉(실습)과 가족의 미래(세미나) 등록에서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둘째, 이주자와 인권 프로그램은 하버드 로스쿨과 Greater Boston Legal Services(GBLS)의 협력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 과목으로는 ① 인권, 국가의 주권, 박해: 강제이주와 난민 보호, ② 이민법, ③ 국제 아동사회, 권리, 세계화, ④ 이주와 난민 정책(세미나), ⑤ 난민과 망명자 옹호(세미나 A, B) 등이 있다.

셋째, 차별과 평등 프로그램은 인종, 성별, 연령, 장애 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발달과정 및 차별반대라는 규범의 적절한 의미와 현재까지도 미국의 대법원과 의회,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관련 논쟁과 ‘개인 대 집단’, 소수자우대정책, 강제중재 등에 관한 논쟁을 면밀히 살펴보는 ‘고용차별’(Employment Discrimination)이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에서 평등을 표현하고 있는 방식을 탐색하

고 보편적인 권리향유에 대한 주장과 문화적·종교적·민족적으로 전통적으로 내세우는 주장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물론 불평등에 관해 이해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잡고 있는 “세계적 지역적 젠더-법의 가능성: Gender, Locally, Globally: The Possibilities of law: Reading Group” 및 여성에 대한 처우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을 검토하면서 관련 자료들로는 국내 재판 사례, 국제기구와 지역의 기구들, 조약 기구, 국제재판소, NGO의 활동 등을 다루는 “여성의 인권(세미나) 등의 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넷째, 인권의 발전과 인권운동 프로그램에서는 인권운동의 기원은 무엇이며 인권운동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인권활동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권신장과 보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된 도전과 딜레마는 무엇인가?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옹호(세미나+실습)’과목은 강독과 토론, 롤 플레이, 옹호전략 참여평가는 물론, 교수가 직접 지도하는 인권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직접 인권변호활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권과 환경 A, B(옹호 세미나+실습)(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Advocacy Seminar A)’ 과목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서로 무관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던 인권법과 국제환경법을 인권과 환경의 연관성, 그리고 옹호와 사회운동이라는 맥락에서 인권과 환경운동을 연관 짓고자 하는 운동의 기원은 무엇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한, 이 두 운동이 공유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두 운동은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지? 인권신장과 보호에 기여하는 이들이 직면한 주된 문제와 딜레마는 무엇인지? 등을 주요 주제로 하고 있다.

끝으로, 국제적 차원의 인권보호 메커니즘 프로그램은 국제적 차원의 인권보호, 국제법 워크숍, 국제형사전범재판소, 국제인도주의 법, 국제인권소송, 전쟁범죄기소 워크숍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나. 컬럼비아대학 로스쿨

컬럼비아 대학교는 직업교육과 학부·대학원 등의 대학교육에 인권을 대두시킨 최초의 대학이다(임재홍, 2008: 76). 또한 컬럼비아 로스쿨은 최초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인권실습 과목을 포함하여, 미국 또는 전 세계 법학 교육에서 제일 먼저 포괄적인 인권 프로그램을 보유하게 된 학교이기도 하다.

컬럼비아 대학교 인권교육 커리큘럼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강조에 인권커리큘럼을 개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학부강좌, School of Journalism, Business School 강좌에도 인권교육 커리큘럼을 개설·운영하면서 전 대학에서 폭 넓게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임재홍, 2008: 77-78). 2007년 가을학기에 컬럼비아 대학에 개설된 인권관련 강좌 수는 50여 개의 강좌에 이르고 이 중 20개는 로스쿨 내에 개설되어 있다.

컬럼비아 로스쿨의 인권관련 교과과정은 크게 공공정책분야, 이민법 분야, 소수자 인권과 법, 인권에 대한 이해와 확장, 법과 인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부적인 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정책분야와 관련하여 위탁가정이나 위탁기관에서 양육된 아이가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과 관련하여 이들을 변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아동옹호클리닉(Child Advocacy Clinic)(실습)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청소년 옹호 세미나 → 청소년 옹호 연구와 전개 → 케이스워크 준비를 위한 강의실 내 연습 및 모의 연습 → 의뢰인 변론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또한, 주택공정거래법과 정책에 관한 강좌이자 인종과 국적, 장애, 가족의 지위, 젠더, 연령, 성적취향 등 연방법이나 주법, 지역의 주택공정거래법으로 규제되는 근거 등을 이유로 임대, 매매, 저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제기하는 소송에서의 법이론 및 민사소송 전략 등을 강의하는’ (학외연수)공정주택거래(Externship: Fair Housing)의 경우 HELP USA(FHJC)의 공정주택거래정의센터에서의 현장실습과 주 1회의 세미나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이민법 분야와 관련하여 미국시민권, 영주권, 비이민자 범주, 망명자 지위 등을 규정하는 법규와 행정절차를 검토하는 과목인 ‘이민법’(Immigration Law)과 학외연수인 ‘이민법’(Externship: Immigration Law) 그리고 이민법과 이민정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민법과 이민정책’(Immigration law and Policy) (세미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소수자 인권과 법과 관련하여서는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연구하는 연방인디언법(Federal Indian Law),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Law), 아시아계 미국인과 법(Asian Americans & the Law)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넷째, 인권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관련하여서는 인권, 인권클리닉(실습), 국제 인권법·정치학 및 연관성, 다문화주의·사회와 법, 평등과 불평등, 세계화와 인권, 인권과 문화의 문제(학제 간 세미나), 국제인권변호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끝으로, 법과 인권과 관련하여 연방인권법, 법과 정치학의 시사문제, 유럽인권협약, 인권·법·개발 워크숍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2) MSW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Southern Illinois University의 MSW과정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잘 알려져 있는 Elisabeth Reichert가 재직 중인 남일리노이대학의 MSW 과정에서도 별도로 ‘인권’이 명시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International Social Work’ 교과목에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교과목 개요에서 “본 선택과목은 인권원리들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 맥락 내에서 이러한 원리들이 사회정책들 및 실천들과 관련되는지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교과과정은 독일과 보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실제화되는 것으로서 사회사업과 공공행정 및 보건과 같은 관련 학문분야에서 직접적 경험을 제공한다. 본 교과과정은 다른 문화들에 대한 탐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상이한 사회들이 사회문제들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심도 있게 다루는지를 위해 구상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과목 목표로 ① 학생들은 인권의 정치적 및 경제적 양상들을 포함하는 인권의 역사적 발달에 대한 이해, ② 사회정책들과 실천들과 관련되는 인권의 기본적 지식을 가지는 것, ③ 문화적 상대주의, 보편성, 개별성과 같은 인권 개념들의 인식 제고, ④ 국제적 장에서 사회정책들, 실천들, 윤리들을 이해하기로 설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교과목에서는 교과과정 중 학생들은 모든 현장방문과 강의에서 전문적 훈련의 형태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초청국의 문화와 환경에 민감해야 하며, 현장방문과 수업에 참여가 요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영국대학의 인권교육

대부분의 영국 대학들의 사회정책학과 내지 사회사업학과에서도 별도로 인권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권교육은 주로 로스

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몇몇 영국 대학의 로스쿨에서 개설하고 있는 인권관련 교과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University of Sunderland: LLM Human Rights(법과대학원)

LLM Human Rights 교과과정은 법률연구와 인권, 젠더, 성별 및 법; 가족법과 인권, 교육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Lancaster University Law School

란카스터 로스쿨은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Terrorism Law을 포함하여 Bioethics & Medical Law, Diplomacy and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rporate Law라는 6 종류의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 UCL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chool of Public Policy; MA Human Rights.

본 과목은 인권에서 숙련된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 인권원리들, 기관들, 과정 및 실제, 이슈들과 방법들에서 연구기술과 본질적인 지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의 이론적 토대(30점), 국제인권: 기준과 제도(15점), 국제법과 인권(15점), 규범적, 법률적 및 경험적 연구방법(15점), 논문(1만 단어)(60점) 등을 가르친다.

(4) The University of York: Centre for Applied Human Rights

가. MA in Applied Human Rights

인권을 법률, 정책, 실제에서 사회정의 증진을 위해 인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2주간의 현장방문 동안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어 남아프리카 인권 옹호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회 제공, 인권 실제에 대한 사회과학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 인권의 다학문적 이해를 도모한다.

나. LLM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

필수과목으로는 인권방어(Defending Human Rights)(MA/LLM), 사회과학과 인권실제(Social Sciences and Human Rights Practice)(MA); 법, 공공정책 그리고 인권(Law, Public Policy, and Human Rights)(MA/LLM), 국제인권법의 적용(Apply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LLM), 국제인권법 클리닉(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LLM), 논문(Dissertation)(MA/LLM). 그리고 선택과목으로는 망명, 이주 및 인신매매(Asylum, Migration and Human Rights); 인권실제의 문화들(Cultures of Human Rights Practice); 개발과 인권(Development and Human Rights); 의료와 인권(Health and Human Rights); 진실, 정의, 및 폭력 후 배상(Truth, Justice and Reparations after Violence); 관용에서의 현대적 이슈들(Contemporary Issues in Toleration); 현대법철학(Contemporary Philosophy of Law); 개발에서 사회적 및 정치적 이슈들: 갈등, 정체성 및 시민권(Social and Political Issues in Development: Conflict, Identities and Citizenship); 시민권과 지구적교육의 교육 및 학습(Teaching and Learning Citizenship and Global Education); 여성, 시민권 및 갈등(Women, Citizenship and Conflict)

다. LLM in Human Rights Law(180점 이수)

필수과목으로 인권: 개념 및 제도들 (Human Rights: Concepts and Institutions(30점)을 개설하고 있으며, 3과목 중 2과목 선택과목으로 평등: 그 기반(Equality: the foundations)(15점), 현대유럽에서 인권(Human Rights in Modern Europe)(15점), 권력, 정치 및 패러독스로서의 인권(Human Rights as Power, Politics and Paradox)(15점), 4과목 선택으로 아동의 권리(The Rights of the Child)(15점); 경제 및 사회권(Economic and Social Rights)(15점), 인권과 민주적 거버넌스(Human Rights and Democratic Governance)(15점), 미국에서의 인권(Human Rights in the Americas)(15점), 갈등의 시기에서의 인권(Human Rights in Time of Conflict)(15점), 국제 망명자보호(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15점), 여권(The Rights of Womens)(15점), 고급 영국 및 아일랜드 인권법(Advanced British and Irish Human Rights Law)(15점), 차별과 불리(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15점), 인신매매와 인권(Trafficking and Human Rights)(15점), 공공이익법(Public Interest Law)(15점), 인권과 환경(Human Riughts and Environment)(15점)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라. Queens's University Belfast: School of Law at Queens's

개설된 교과목으로는 인권: 개념과 제도(Human Rights: Concept and Institution); 현대유럽에서의 인권(Human Rights in Modern Europe), 고급영국 및 아일랜드 인권법(Advanced British and Irish Human Rights Law), 평등: 그 기반(Equality: the Foundation), 차별과 불리(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s), 권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Critical Approaches to Rights), 아동의 권리(The Rights of the Child), 여성의 권리(The Rights of Women), 망명자의 국제적 보호(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경제 및 사회권(Economic and Social Rights), 인권과 착취(Human Rights and Exploitation), 인권과 국내 거버넌스(Human and Domestic Governance), 미국에서의 인권(Human Rights in the Americas), 갈등의 시대에서의 인권(Human Rights in Time of Conflict), 종교와 법(Religion and Law), 공공이익법-국제적 및 국내적 관점(Public Interest Law-International and National Perspectives) 등이다.

(5) University of Sussex: MA in Human Rights

서섹스 대학의 인권교육은 단지 법률적 접근을 넘어 빈곤, 폭력, 정체성, 세계화의 폭넓은 과정들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내재되었는지와 지구적 거버넌스의 형태들의 등장을 탐구한다. 인권 학위과정은 이러한 중요한 관점들을 반영한다. 다학제간 학위과정은 인류학, 법학, 국제관계, 정치학을 포함하는 다학제적 관점의 폭넓은 범주로부터 인권영역에서 최근의 논의들의 이해를 제공한다. 필수과목: 인권과 문화 정치(Human Rights and the Politics of Culture), 자유주의, 현대성, 그리고 지구화(Liberalism, Modernity and Globalisation), 연구방법 및 전문적 기술(Research Methods and Professional Skills). 선택과목: 개발과 사회정의를 위한 실천주의(Activism for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아동기의 인간학(Anthropology of Childhood), 조화와 재건의 인류학(Anthropology of Reconciliation and Reconstruction), 복잡한 인본주의 등장들(Complex Humanitarian Emergencies), 환경과 개발에서의 비판적 논의들(Critical Debates i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문화 및 정체성 권리(Culture and Identity Rights), 논문(Human Rights), 일자리로서의 논문(Dissertation with Placement)(Human Rights), 폭력, 갈등 및 화해의 구체화 및 제도와(Embodiment and institutionalisation of violence, conflict & conciliation),

공정무역, 윤리적 사업 및 신도덕적 경제(Fair Trade, Ethical Business & new Moral Economics), 젠더, 폭력 및 전쟁(Gender, Violence and War), 지구화와 농촌변화(Globalisation and Rural Change), 이주권과 이주(Human Rights and Migration), 국제관계에서의 인권(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s), 지식, 권력 및 저항(Knowledge, Power and Resistance), 의료인류학: 의료와 치유의 문화적 이해(Medical Anthropology: Cultural Understandings of Health and Healing), 이주, 불평등, 사회변화(Migration, Inequality and Social Change), 빈곤, 한계성 및 일상생활(Poverty, Marginality and Everyday Lives), 망명과 발달(Refugees and development), 원조의 건축학(The Architecture of Aid), 기후변화의 정치경제학(The Political Economy of Climate Change), 국가 간 이주와 이주(Transnational migration and diaspora), 여성과 인권(Women and Human Rights).

3) 일본 대학의 인권교육

일본의 사회복지 전공영역에서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 권리옹호와 성년후견제도가 포함됨으로써 교과과정에 편입되게 되었다(<http://www.mhlw.go.jp/shingi/2008/03/dl/s0313-9f.pdf>).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조치제도에서 계약제도로 전환되는 등 사회복지사를 둘러싼 상황이 변화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역할 또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역할로는 복지과제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과 필요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역할,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존엄을 가진 자립생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하는 여러 전문직과 사업자, 자원봉사자들의 연대를 꾀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원조하는 역할, 지역의 복지과제의 파악과 사회자원의 조정, 개발,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복지 증진을 원조하는 역할 등을 적절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복지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복지 과제를 가진 사람에 대한 상담과 대응에 관한 포괄적,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 학대방지, 권리옹호, 고립방지, 살아가는 보람의 창출, 건강유지, 취업지원 등에 관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초적 지식의 습득을 실천적으로 교육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상에 입각해 실천력이 높은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관점에서 신교육 교과과정의 수정을 행한다.

이와 같은 후생노동성의 사회복지사 양성방향 수정에 대한 검토회의에서 제시된 사회복지사 교육 교과과정의 주된 변경 내용은 권리옹호와 인권을 다루는 교과목이 필요하다는 점과 사회복지전문직의 전제로 장애인 이념과 취약집단(고령자 및 아동)에 관한 이념을 교육하는 것으로 서비스와 권리옹호라고 하는 항목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시된 인권과 관련한 교과과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교육 교과과정

성년후견제도의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을 학습하고 법학의 기초지식과 권리옹호에 관한 항목을 더해 과목명 역시 권리옹호와 성년후견제도로 변경한다.

가. 목표

- ① 상담원조활동과 법(일본국 헌법, 민법, 행정법)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
- ② 상담원조활동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 ③ 성년후견제도의 실제 이해
- ④ 사회적 배제, 학대 등의 권리침해와 치매 등의 일상생활 상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권리옹호활동의 실제에 대한 이해

나. 상정되는 교육내용 및 강의계획서의 내용

- ① 상담원조활동과 법과의 관련
 - 상담원조활동에 상정되는 법률문제: 복지서비스의 이용과 계약, 소비자 피해와 소비자 보호, 자기파산, 행정처분과 불복신청 등
 - 일본국 헌법의 기본원리의 이해: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 민법과 행정법의 이해
- ② 성년 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임의후견, 보좌, 보조의 내용, 민법에 의한 부양의 개요, 성년후견제도의 최신경향 등

- ③ 자립생활 지원사업: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의 개요
- ④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 ⑤ 권리옹호에 관련된 단체의 역할과 실제: 가정재판소, 지자체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의 실제
- ⑥ 권리옹호활동의 실제: 치매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지원, 소비자 피해를 받은 사람을 위한 대응의 실제, 피학대자를 위한 대응과 실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대응과 실제, 비행청소년의 대응, 홈리스, 다문제 중복케이스, 장애인에 대한 대응과 실제.

다. 2009년 4월 1일 이후 변경된 사회복지사시험 지정과목

- ① 인체의 구조와 기능 및 질병, 심리학이론과 심리적 지원, 사회이론과 사회시스템 중 1과목
- ② 현대사회와 복지
- ③ 사회조사의 기초
- ④ 상담원조의 기반과 전문직
- ⑤ 상담원조의 이론과 방법
- ⑥ 지역복지의 이론과 방법
- ⑦ 복지행·재정과 복지계획
- ⑧ 복지서비스의 조직과 경영
- ⑨ 사회보장
- ⑩ 고령자에 대한 지원과 개호보험제도
- ⑪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제도
- ⑫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아동·가정복지제도
- 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생활보호제도
- ⑭ 보건의료서비스
- ⑮ 취로지원서비스, 권리옹호와 성년후견제도, 갱생보호제도 중 1과목
- ⑯ 상담원조 연습
- ⑰ 상담원조 실습지도
- ⑱ 상담원조 실습

(2) 일본 대학들의 인권교육 실제

가. 일본복지대학 나고야지역

- ① 과목명: 권리옹호와 성년후견제도
- ② 주제: 치매(노)인과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 ③ 강의내용 요약: 사회복지사의 대인지원은 경제적 지원, 법적지원, 보람 있는 삶에 대한 동기부여 등 3가지 점으로 집약된다. 본 수업은 법적지원과 보람 있는 삶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지원에 초점을 두는 과목이다. 사회복지사는 판단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본 수업에서는 일상생활상의 여러 문제, 예를 들어 현실적인 과제를 사회복지사로서 해결해가는 방법을 생각한다. 법적으로 강한 사회복지사 배양과 함께 이용자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 국가시험과목이고 국가시험대책을 고려해 강의를 실시한다.
- ④ 학습목표: 판단능력이 저하된 자의 법적지원과 삶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지원;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대변자로서 팀 지원체계 구축;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옹호 실천
- ⑤ 강의계획:
 - 법률에 강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 헌법을 기본으로 한 법률상담지원업무 (개호살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 민법을 기본으로 한 법률상담지원업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 행정법을 기본으로 한 법률상담지원업무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권리구제 방법)
 - 사회법을 기본으로 한 법률상담지원업무 (제 삼자평가와 고충해결의 기법)
 - 성년후견제도의 법정후견제도 (치매, 장애인의 재산관리 신상감호, 사례)
 - 성년후견제도의 법정후견제도 (판단능력이 저하되기 전의 사전대책과 사례)
 - 일생생활 자립지원사업 (치매노인, 장애인, 독거노인의 금전관리와 일상

생활 지원과 사례)

-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저소득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과 사례)
- 권리옹호에 관한 조직 및 단체 (가정재판소, 지역포괄지원센터, 사회복지사회 등과 사례)
- 외국의 성년후견제도에서 배울점

나. 오사카부립대학 오사카지역

- ① 과목명: 권리옹호론
- ② 수업목표: 상담원조활동과 권리옹호와의 관련, 학대방지법제, 성년후견제도, 일상생활자립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함과 동시에 지원의 실천과 그 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 ③ 수업개요: 사회복지에 있어서 권리옹호; 성년후견제도의 현상과 과제;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의 현상과 과제; 권리옹호활동의 실천방법.

다. 동양대학 도쿄지역

- ① 과목명: 권리옹호론
- ② 서브타이틀: 장애인과 노인의 인권과 권리옹호
- ③ 강의 목적 및 내용: 최근 UN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조약”이 마련되어 비준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비준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차바현 등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작년에는 “장애인학대방지법”이 발효되는 등 국내외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옹호를 둘러싼 활동이 활발하다. 장애인 등의 차별과 학대는 유감스럽게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권’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요즘, 무의식적으로 ‘차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보이고 있고, 사회시스템이 ‘학대’ 환경을 유발시키는 일도 허다하다. 본 과목은 이러한 장애인, 노인들에 관한 인권과 권리옹호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식과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④ 강의목표: 장애인, 노인 등이 처해 있는 사회적 배경과 경위에 대한 설명; 권리옹호 제도와 사회적 자원에 대한 설명;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옹호에

대해 그 현상과 과제를 인식하고 설명.

⑤ 강의 계획:

- 인권·권리옹호란 무엇인가?
- 장애인, 노인이 처해 있는 역사적 배경과 경위
- 권리옹호제도와 사회적 자원
- 당사자에 대한 권리옹호활동
- 인권침해의 실태: 지적 장애인·여성·아동
- 인권침해의 실태: 노인·외국인근로자· 기타
- 상담지원체제와의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 장애인종합지원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 성년후견제도와 옴부즈만제도에 대해
- 권리옹호의 과제와 향후 전망
-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에 대해
- UN의 권리조약에 대해
- 노인·장애인학대법의 동향에 대해
- 성년후견제도와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제도에 대해
- 총괄

라. 동양대학 도쿄지역

① 과목명: 권리옹호론

② 서브 타이틀: 권리옹호와 성년후견제도

③ 강의 목적 및 내용: 권리옹호란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 의사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가진 사람들의 자기결정과 권리의 주장을 지원하거나 대변하는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성년후견제도와 옴부즈만,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 등을 통해 행하는 권리활동이다. 본 강의에서는 권리옹호의 의의와 기능을 설명함과 동시에 권리옹호가 실천되어지는 장면으로서 성년후견제도를 들어 권리옹호활동의 실제에 대해 학습한다.

④ 강의목표: 권리옹호의 의의에 대한 이해; 권리옹호의 기능을 유형화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함; 성년후견제도의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함;

권리옹호에 필요한 법률지식 습득; 권리옹호의 과제에 대해 지적할 수 있도록 함.

⑤ 강의계획:

- 개요
- 사회복지와 권리옹호
- 권리옹호의 이의
- 권리옹호의 유형
-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1
-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
-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3
-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4
- 일상생활자립 지원사업
- 권리옹호활동의 실제
- 권리옹호활동에서 요구되는 법류지식(헌법·행정법)
- 권리옹호활동에서 요구되는 법률지식(재산법)
- 권리옹호활동에서 요구되는 법률지식(가족법)
- 권리옹호와 인권보장
- 총괄

마. 일본대학 도쿄지역

- ① 과목명: 권리옹호와 성년후견제도
- ② 수업주제: 권리옹호와 관련법과 지원에 대한 이해
- ③ 수업목표: 인권존중과 존엄의 확보는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이다. DV, 아동, 장애인, 고령자의 학대와 함께 치매, 노노개호, 개호살인, 사회적 배제 등 인권복지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긴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본 강의에서는 권리옹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함께 사회복지사로서 문제의 배경과 과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실천을 학습한다.
- ④ 수업방법: 수업은 강의형식이고 보다 실천적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실습을 행하는 경우도 있음.

- ⑤ 이수조건: 사회복지사 국가시험과목이라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은 가능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⑥ 강의계획:
- 인권이란 무엇인가: 세계인권선언, 일본국 헌법
 - 권리옹호란 무엇인가
 - 현대에 있어 인권과제와 욕구
 - 권리옹호활동의 관련 법규와 행정, 조직과 전문직
 - 아동학대와 권리
 - 장애인학대와 권리옹호활동
 - DV(가정폭력)과 권리옹호활동
 - 사회적 배제: 홈리스 등
 - 고령자학대와 권리옹호활동
 - 성년후견제도
 - 학대대응 사회복지
 - 자립생활자립지원사업
 - 권리옹호활동의 실제: 사례연구
 - 사회복지연구
 - 평가와 총괄 그 외

바. 방송대학

- ① 과목명: 사회복지와 권리옹호
- ② 강의개요: 본 과목은 사회복지와 법 영역과의 관련(접점)을 살펴보며 문제의 상황과 해결책에 대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과목은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과 법학에 관한 기초지식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종합과목이다. 사회복지 전 분야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사회복지 관련영역에 있어서 인권과 권리의 개념을 상기해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본 과목은 기본적인 인권에 입각해 사회복지의 권리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한다.
- ③ 강의계획:
- 기본적 인권과 사회복지

- 인권의 역사와 사회복지
- 국제적인 인권보장과 사회복지
- 사회복지의 구조개혁과 계약
- 성년후견제도
- 사회적 후견
- 서비스 질을 높이는 제도
-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처
- 학대 및 가정폭력의 방지
- 세계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 지역복지와 커뮤니티
- 사회복지와 행정법제
- 사회복지와 행정소송
- 행정의 공적책임
- 권리옹호의 담당자

사. 서부문리대학 사이타마지역

- ① 과목명: 권리옹호와 성년후견제도
- ② 수업목표: 상담원조와 법(일본국 헌법의 기본원리, 민법·행정법의 이해)의 관련을 이해하고 상담원조에 필요한 권리옹호의 개념과 제도(성년후견제도 등)에 대해 이해한다.
- ③ 수업의 내용과 방법: 주로 강의 형식이지만, 실제사례 검토로는 집단토의 진행
- ④ 강의 계획:
 - 상담원조활동에 대한 법률문제
 - 상담원조와 법: 일본국 헌법의 기본원리 이해
 - 상담원조와 법: 민법의 이해
 -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의 개요·임의후견
 - 성년후견제도: 민법에 있어서 친권, 부양의 개요
 -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의 최신동향
 -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의 이해: 소책자

- 성년후견지원사업제도의 개요
- 권리옹호에 관한 조직과 단체: 가정재판소의 역할·법무국의 역할·시정촌의 역할
- 권리옹호에 관한 조직과 단체: 변호사의 역할·사회복지사의 활동과 실제
- 권리옹호활동의 실제: 치매노인을 위한 지원·소비자 피해를 받은 사람의 대응과 실제
- 권리옹호활동의 실제: 피학대아동을 위한 대응과 실제·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대응과 실제
- 권리옹호활동의 실제: 비행소년을 위한 대응의 실제·흡리스에 대한 대응과 실제
- 권리옹호활동의 실제: 다문제중복사례의 대응과 실제·장애인·아동을 위한 지원의 실제
- 권리옹호시스템·제도관련 과제·총괄: 학기말 테스트

아. 초쿠바대학 이바라키현

- ① 과목명: 권리옹호와 성년후견제도
- ② 수업목표: 상담원조에 있어서 필수인 권리옹호의 이념과 실제의 지원방법을 설명한다. 관련법, 특히 성년후견제도의 강습을 행하고 타자의 의사결정과 생활에 관한 중요성과 지원자의 역할, 과제에 대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수업 도달 목표: 상담원조활동과 법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 성년후견제도와 그 실제에 대한 이해; 권리옹호의 이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
- ④ 강의계획:
 - 상담원조활동에 관한 법 이해
 - 상담원조활동과 관련되어 상정되는 법률문제와 그 대응의 실제
 - 일본국 헌법, 민법, 행정법
 - 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기본사항, 수속·절차와 사무
 - 성년후견·보좌·보조, 임의후견
 - 해외의 제도
 - 성년후견제도의 과제

- 후견인 역할 관련 방향과 시민후견인
- 법인 후견
- 생활지원과의 연대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 권리옹호에 관한 제도
-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
-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 그 외 관련제도의 활용
- 관련자 기관과의 전문직
- 권리옹호활동의 실제
- 권리옹호
- 결정의 지원과 패터널리즘(가부장주의)
- 인권침해사태와 권리옹호활동의 실제

자. 동지사대학 교토지역

- ① 과목명: 권리옹호와 성년후견
- ② 강의 개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고령,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역에서 누구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의 결과 이용자가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업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제공·부여받는 복지(조치)로부터 자기결정에 의한 복지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치매, 지적장애, 정신장애에 의해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고 대등한 계약행위를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들이며, 이에 따라 제도를 보다 실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구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최근 고령자와 장애인을 노리는 악질상법피해, 다중채무, 학대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권리옹호활동을 뜻하는 자기결정지원의 의의와 기능, 지원에 필요한 제도(성년후견제도와 일상생활자립 지원사업 등), 실제로 지원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의점, 기술을 습득한다. 이 외에 사회복지원조와 관련된 과제, 특히 사법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제, 사법에

관한 지식, 그 활용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상사를 초청하는 등 실천에 입각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 습득한 것을 사회복지사로서 실천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천력을 획득하는 것을 중시한다.

③ 수업 도달 목표: 수강생이 장래 사회복지실천현장 등에서 권리옹호활동을 행할 때 필요한 지식, 유의점, 지원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생활과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원조와 법, 사법과의 관련, 성년후견제도와 일상생활자립 지원사업, 소비자 관련 서비스, 학대 원조 등의 내용, 권리옹호에 관한 기관, 전문직의 역할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냉철한 인권감각과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 필요로 하는 실천력을 획득한다.

④ 강의계획:

- 오리엔테이션, 상담원조활동에 있어 상정되는 법률문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과제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회복지법에서의 계약의 이해, 자기결정의 의미 고찰
- 일본국 헌법의 이해: 상담원조활동과 관련된 법을 확인
- 행정법, 민법이 이해: 상담원조활동과 법과의 관련을 확인
- 성년후견제도·법정후견제도: 고령자와 장애인의 삶에 입각해 제도의 필요성 확인
- 성년후견제도·법정후견제도: 제도의 내용, 이용방법을 사례를 통해 학습
-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과 관련된 제도의 내용, 이용방법을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
- 일상생활자립 지원사업 제도의 내용: 이용방법을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
- 일생생활자립 지원사업 제도의 내용: 이용방법을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
- 성년후견제도의 실제·지원의 실제: 초청강사를 통해 지원의 시점과 유의점을 사례를 통해 학습
- 권리옹호활동과 관련된 기관과 전문직의 역할: 수강자의 거주지에 있는 인권옹 호기관의 주소 및 전문직의 역할 파악
- 저소득층의 문제에 대한 탐구: 지원의 전개와 유의점을 사례를 통해 학습
- 권리옹호활동의 실제 ‘홈리스지원’: 지원의 전개와 유의점을 사례를 통

해 학습

- 권리옹호활동의 실제 ‘고령자 학대’, ‘아동학대’: 지원의 전개와 유의점을 사례를 통해 학습
- 권리옹호활동의 실제 ‘장애인 학대’: 자원의 전개와 유의점을 사례를 통해 학습
- 학습전체 복습

4) 기타 국가의 인권교육

▶ Department of Social Work,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본 교과목은 불리에 처해 있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 수단으로서 인권발달(특히, 사회 및 경제권)을 검토한다. 본 교과목은 역사적 및 비교적 맥락에서 인권을 위치시키며 국제 인권규범과 기관들은 아동, 이주자, 여성, 소수인종 등과 같은 취약한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어떻게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며,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에 관한 국제협약과 기타 국제인권문건들을 검토한다. 또한, 빈곤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과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수행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논의할 것이다. 본 교과목은 개별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인권의 사례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5) 특징 및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몇몇 국가들의 인권교육과 관련한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개별 국가들에서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제2차 프로그램(2010-2014)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은 아직 활성화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공영역의 특성에 따라 인권교육에 대한 강조는 차이가 나고 있는데, 법학, 정치학 등의 일부 전공영역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기타 전공영역에서는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미국 대학의 법학전문대학(law school)에서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된 것은 국제법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Steen and Mathiesen, 2005: 151).

둘째, 사회복지 전공영역에서는 교과목 명칭에 구체적으로 ‘인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교과목을 통해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교과목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로써, 남일리노이대학의 MSW 과정에서는 ‘국제사회사업’(International Social Work) 교과목에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사회과학 전반에서 학제간 교과과정 교류를 통하여 인권문제와 관련한 학생들의 욕구에 대응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 2009년 4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시험과목에 ‘권리옹호와 성년후견제도’가 선택과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이 과목이 사회복지 전공영역의 교과목으로 개설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전공영역에서 인권교육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권리옹호와 성년후견제도’ 교과목이 제시하고 있는 학습 목표를 보면, 상담원조활동과 법(일본국 헌법, 민법, 행정법)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 상담원조활동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성년후견제도의 실제 이해, 사회적 배제, 학대 등의 권리침해와 치매 등의 일상생활 상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권리옹호활동의 실제에 대한 이해 등이다.

끝으로, 외국의 고등교육체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사례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공영역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 시험과목에 ‘권리옹호와 성년후견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인권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데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자격시험과목으로 인권관련 교과목을 포함시키면 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 대학의 법학전문대학(law school)에서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된 계기가 국제법에 대한 관심 제고에 있었다는 주장을 참고할 때(Steen and Mathiesen, 2005: 151),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의 관심영역을 한국에 국한되기 보다는 보다 ‘세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는 이미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사회복지 발달을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제3 세계 학생들이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UN에서 발표한 각종 행동계획 등의 인권관련 국제협약 등을 사회복지전공자를 위한 인권교재 개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각 대학들에서 가르칠 인권 교육 표준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 개발: 『인권과 사회복지』

1. 교과목 개요	103
2. 교과목 목표 및 참고교재	104
3. 교과목 내용	106
4. 교과목 교육방법	113

1. 교과목 개요

▶ 학점 및 시간: 3학점 3시간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할 때 어느 때 보다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는 대부분 인권침해가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과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사회복지 전문성은 인권존중 태도와 직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라는 이론적 학습을 넘어 인권의 실천적 내용과 현실적 요소가 반영된 교과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감수성을 향상하는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인권과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전달현장에서 인권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역점을 두는 교과목이다. 따라서 본 과목의 주요 목표는 장차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게 될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인권의식을 강화하고 인권감수성을 확보하게 하여, 향후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현장에서 인권기반 실천을 하도록 교육하려는 것이다. 본 과목의 내용은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 학습과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의 두 가지로 나뉜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은 실천모델과 실천기술에 대한 이론 학습과 인권 취약인구별 실천 과정과 실천 기술 습득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더불어 인권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며 사례에 대한 토의, 세미나, 시연, 실습을 거쳐 현장에서 효과적인 실천을 미리 준비하게 한다.

본 교과목의 수강 결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본질에 대해 객관적 및 포괄적 관점을 취할 수 있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인권기반 대응 및 개입 등 실천적 역량을 지닌 사회복지 전문인을 배출하는 것으로 그 성과로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인권감수성을 지닌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

2. 교과목 목표 및 참고교재

1. 인권 개념정의, 인권 발달역사, 인권관련법 등 인권에 대하여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더불어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관성을 공부한다.
2.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모델,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기술론과 실천과정을 학습한다.
3. 인권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비전, 관점, 가치관을 익히고 인권 취약인구를 대상으로 복지현장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법론을 익히도록 한다. 인권기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과정, 전략, 기술을 익힌다.
4. 인권 취약인구 즉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및 영역별 인권문제와 실태를 살펴본다. 더불어 인권 취약인구의 인권침해 관련사례와 통계를 수집한다.

▶ 참고교재

〈인권 일반〉

강수택 외. 2009. 대학인권지표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과 사회복지〉

김형식. 2008. 사회복지와 인권: 실천적 접목의 과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인권인식확산과 활성화방안 발표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박영란 외. 2004.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손병돈 외. 2008.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심창학·강수택 엮음. 2011. 사회정책과 인권.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총서 1. 오름.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2008.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Elizabeth Likert. 2008. Social Welfare and Human Rights.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연구회 역.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Ife J. 2001.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형식·여지영 역.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 복지.

United Nations Center for Human Right. 1994. Human Right and Social Work. UN Publications.

〈사회복지 실천〉

- 양옥경 외. 2011. 사회복지실천론. 나남.
- 오정수·류진석. 2009.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장수미 외.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학지사.
- Beckett C. & Maynard A. 2005. Values and Ethics in Social Work: An Introduction. Sage Publications.
- Hepworth D. H. Rooney R. H. & Larsen J. A. 2002. Direct Social Work Practice: Theory and Skills. 6th Ed. Brooks/Cole.
- Johnson L. C. & Yanca S. J. 2004. Social Work Practice: A Generalist Approach. 8th Ed. Allyn and Bacon.

〈인권 취약인구〉

- 국가인권위원회. 2006.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사회복지분야(노인) 인권 교육교재.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사회복지분야(정신장애) 인권 교육교재.
- 국가인권위원회/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7. 사회복지분야(노인복지시설)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교재.
- 국가인권위원회/한국아동복지연합회. 2006. 사회복지분야(아동)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교재.
- 국가인권위원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06. 사회복지분야(장애인)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교재.
- 국가인권위원회/한국정신요양협회. 2007. 사회복지분야(정신장애요양시설)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교재.
- 김중섭 엮음.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인권총서 3. 오름.
- Bentley K. J. 2002. Social Work Practice in Mental Health. New York: Brooks/Cole.
- Downs S. W., Moore E., McFadden E. J., Michaud S. M., & Costin L. B. 2004.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7th Ed. Pearson Education, Inc.
- Heumann L. F., McCall M. E. & Boldy D. P. 2001. Empowering Frail Elderly People: Opportunities and Impediments in Housing, Health, and Supportive Service Delivery. Westport, CT: Praeger.
- Rose S. R., & Fatout M. F. 2002. Social Work Practice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Allyn & Bacon.
- Rothman J. C. 2002. Social Work Practice across Disability. Allyn & Bacon.

Sue D. W. 2005.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John Wiley & Sons Inc.

〈기타〉

EBS 하버드 특강 마이클 센델의 정의. 또는 마이클 센델. 2010.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3. 교과목 내용

1) 인권과 사회복지 개관

(1) 인권의 개념과 구성

인권의 기초 개념을 익히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인권의 개념정의, 구성요소, 가치기반을 배우게 된다. 인간은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이 있으며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타고 난다. 즉 인권은 천부적 권리로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의 개념은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사회통합, 사회적 연대와 같은 사회복지의 철학과 실천원리에 내재되어 있다. 인권은 자유권(freedom rights), 사회권(social rights), 연대권(solidarity rights, 혹은 평등권)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인권은 생명, 자유, 평등, 정의, 사회적 책임을 기본가치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서 인권이 왜 존중되어야 하는지, 인권이 침해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인권의 역사적 발달

근대 이후 인권의 발달 역사를 개관한다. 먼저 인권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를 짚어본다.

- 18세기: 천부인권론과 근대 시민혁명, 영국의 정치혁명과 프랑스 시민혁명
- 19세기~20세기: 1차 세계대전, 사회권과 복지국가의 등장
- 20세기 이후: 세계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인권의 국제화 동향, 세계화와 민주주의, 국제관계와 인권의 상대주의 등

다음으로 인권의 개념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 인권에 대한 역사적 시각은 어떻게 변해 온 것인가 하는 인권의 발달 역사를 살펴본다.

- 1세대 인권: 자유권 혹은 시민권 정치적 권리
 - 2세대 인권: 사회권 혹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3세대 인권: 연대권 혹은 집단적 권리
- 마지막으로 한국의 인권발달 역사를 짚어본다.

(3) 인권관련법과 제도

먼저 인권관련 국제규정을 살펴본다. 가장 기초가 되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을 위시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76)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76)의 국제인권조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이 사회 복지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인권 취약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별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아울러 UN 등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와 NGO 등 관련 기구 및 조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권관련 법·조례로써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살펴보고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 조직, 단체는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4) 인권과 사회복지

인권은 사회복지의 핵심 윤리이며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기본 가치이다.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에는 이용자의 자기결정, 수용, 비심판적 태도, 비밀보장 등 인권의 원칙들이 내재되어 있다. 국제사회복지사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 IFSW)는 '국제인권정책(International Policy on Human Rights)'에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준수해야 할 자립, 사회정의, 책임, 무차별 등 6개의 인권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인권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권과 사회복지의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이해한다. 본 장에서는 인권과 사회복지의 개념과 원칙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다

음으로 인권의 발전이 사회복지 제도형성과 정책결정, 그리고 서비스 실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2)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1)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모델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모델(Human Right based Social Work Practice Model)은 인권적 시각을 사회복지실천에 접목하는 것으로 기존의 모델들을 확장하고 포용하여 사회복지실천의 정당성에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복지 접근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준다. 기존의 인권기반 실천모델로 사회정의모델, 시민권모델, 욕구모델이 있다. 사회복지 실천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권익옹호,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모델로는 권한강화모델, 강점중심모델, 이용자참여모델 등 통합적 모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 시설수용모델에서 벗어나 가일층 선진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인권기반 실천모델이다. 본 장에서는 권한강화모델, 강점중심모델과 더불어 이용자참여모델 등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모델을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이 가운데 이용자참여모델은 특히 인권기반 접근모델로 전문가와 이용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인권기반 실천모델의 기본 전제도 학습하게 된다.

(2)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과정

Ife(2000)과 Reichert(2003)가 제시한 인권기반 접근법에 의하면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은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실천과정 내내 대상자뿐만 아니라 동료, 사회복지사 등 모든 이에게 인권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와 대상자 사이에 대화와 참여를 강조하게 되며 두 사람은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과정은 통합적 접근을 의미한다. 앞서 권한강화모델, 강점중심모델, 이용자참여모델 등을 바탕으로 통합적 접근을 실천하게 된다.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과정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실천과정을 따르되 인권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각각의 인권 취약인구의 특성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실천하게 된다.

사회복지의 대표적 실천과정인 사례관리에 대해 배운다. 접수, 정보수집 및 사정, 계획과 개입, 종결과 평가, 모니터링과 피드백과 같이 사례관리 과정의 흐름을 익힌 후 인권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다.

(3)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기술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기술은 기본적으로는 일반 사회복지실천 개입기술 및 개입기법을 따르되 인권 원칙을 반영하도록 한다. 각각의 인권 취약인구의 특성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실천한다. 사회복지 실천과정 내내 개인, 집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기술과 개입기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차원의 사회복지 실천기술과 개입기법도 학습한다. 특히 사회복지사와 이용자와의 신뢰적 관계 형성과 원활한 소통, 집단 구성원의 자기결정권, 민주적 지역사회 복지 실천방법, 이용자 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과 계획 수정 등은 인권의 원칙을 적용하는 실천기술과 개입방법을 익혀야 한다. 특히 권한강화모델, 강점중심모델, 이용자참여모델을 바탕으로 이용자 개인, 집단을 위한 옹호, 권한증진, 참여, 의사소통 등 구체적인 실천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4) 사회복지전문직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시설장과 직원 등 사회복지전문직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핵심인력이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달하며 실천과정 내내 이용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하게 된다. 국제사회복지사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 IFSW)는 사회복지를 인권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전문직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여야 함을 천명하였다. 이에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강령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 및 태도를 알아본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유형과 실태, 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직면하는 인권의 충돌 혹은 인권의 딜레마를 이해하도록 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전문직이 현장에서 이용자로부터 당하는 인권침해 실태, 열악한 처우와 과중업무에 따른 소진문제,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3) 인권 취약인구와 사회복지 실천

(1) 아동·청소년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우선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1981), 청소년기본법(1991),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1991)도 아울러 알아본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안전, 보호, 주거 등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과 학대, 유기, 빈곤 등 아동·청소년이 처해 있는 인권실태 및 현황을 분석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가장 높은 아동학대, 성폭력 등 아동의 인권쟁점 영역을 파악한 후, 어떠한 방식으로 인권기반 사회복지를 실천할 것인가를 규명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 가정위탁과 시설보호에서 아동학대 사례,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사례, 아동 성폭력 사례, 학업중단과 가출청소년 사례를 수집하여 사회복지 실천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논의한다.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되는 Kadushin(1977)의 사회서비스 유형도 아울러 알아본다.

(2) 노인 인권

노인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고령화행동계획’(UN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1992), 노인을 위한 UN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 ‘고령화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 2002) 등 국제규정을 먼저 살펴본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1981)도 살펴본다. 다음으로 건강권, 주거권, 이동권, 문화권, 사생활 보장, 환경권 등 노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과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구분해서 노인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쟁점을 논의한다. 가장 인권침해 소지가 큰 요양보호시설이나 생활보호시설 노인의 인권침해 사례,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나 재정적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인권기반 사회복지를 실천할 것인가를 과정 및 기술을 규명한다.

(3) 장애인 인권

먼저 장애인⁴²⁾ 관련 국제규정인 UN의 ‘장애인권리선언’(1975)과 ‘장애인권리

협약(2006)’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의 ‘ADA’(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1989),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2004), 장애인차별금지법(2007) 등 장애인 인권 관련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평등권, 생존권, 사회권, 문화권, 정치권, 권리구제 등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 인권의식과 장애인 당사자주의 등 이론적 기반을 배운다. 다음으로 일반 장애인의 인권실태 및 현황을 파악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가장 높은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재가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사례, 시설거주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사례, 사회복지전문직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한다.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과정 및 실천기술을 규명한다.

(4) 정신장애인 인권

정신장애인 관련 국제규정인 UN의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1991)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입원 및 치료, 사회복귀, 정신보건시설에 관한 기본법인 정신보건법을 알아본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알아본다. 다음으로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사회권,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차별금지 등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신장애인이 처해 있는 인권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로 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가장 높은 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이송, 입소, 퇴원 등을 둘러싼 인권쟁점 영역을 파악한다.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퇴원 사례, 시설보호 정신장애인의 학대사례, 가정에서 방치되는 정신장애인 사례 등을 수집하여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인권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인권기반 사회복지실천을 행할 것인가를 규명한다.

(5) 다문화가족 인권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화·국제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많은 이주민들이 혼인이나 일터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 다문화가

42)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법정 장애유형을 가진 일반 전체 장애인

족은 크게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새터민으로 나눌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인권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과 ‘이주노동자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과 같은 다문화집단 관련 국제규정을 알아본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지원법(2011)과 가정폭력방지법(2006)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동권, 차별금지, 근로권 등 다문화가족이 누려야 할 인권 유형과 보장내용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이 처해 있는 인권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인권쟁점 영역을 파악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례, 다문화아동에게 일어나는 학교폭력 등 다문화가족에게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인권기반 사회복지실천할 것인가를 규명한다. 이상 13개 소주제를 주차별 강의계획안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 『인권과 사회복지』 주차별 강의계획

주차	강의내용	세부강의내용
1주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2주	인권의 개념과 구성	- 인권의 개념 - 인권의 구성
3주	인권의 역사적 발달	- 구미 인권발달의 역사적 배경 - 3세대 인권론
4주	인권관련법	- 국제: 세계인권선언 등 - 국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5주	인권과 사회복지	-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원칙 비교 - 인권과 사회복지의 공통점, 차이점 - 인권관점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천특성
6주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모델	- 권한강화모델 - 강점중심모델 - 이용자참여모델
7주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과정	-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해 - 인권기반 사례관리의 흐름
8주	중간고사	
9주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기술	- 개인대상, 집단대상, 가족대상, 지역사회 - 실천기술 및 개입기법

주차	강의내용	세부강의내용
10주	인권과 사회복지전문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강령 - 인권침해와 문제유형 - 인권의 충돌 혹은 딜레마 - 사회복지전문직의 역할과 기능
11주	아동·청소년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관련법 - 인권유형과 보장내용 - 인권침해 실태와 현황 파악 - 사례개입 실천
12주	노인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관련법 - 인권유형과 보장내용 - 인권침해 실태와 현황 파악 - 사례개입 실천
13주	장애인 인권 / 정신장애인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관련법 - 인권유형과 보장내용 - 인권침해 실태와 현황 파악 - 사례개입 실천
14주	다문화가족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관련법 - 인권유형과 보장내용 - 인권침해 실태와 현황 파악 - 사례개입 실천
15주	기말고사 및 시연 평가회	

4. 교과목 교육방법

1) 교재개발

본 교과목 강의를 위해 관련 교재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강의를 위해 기본서인 『인권과 사회복지』 집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저서에는 앞서 주별 강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강학생들이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인권기반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권과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습 자료들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도 수반된다. 교수나 강사가 관련 학습 자료를 직접 개발하는 것은 범위와 역량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강의를 하는 동안

활용하는 여러 가지 매체물, 영상물, 파일 등 기존에 개발된 자료의 목록을 색인하여 정리하여 수강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2) 강의

본 교과목 내용의 핵심 방법이다. 교과서 전달식 단순 강의는 지양하고 관련 통계, 정보, 관련 사례를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여 파워포인트 작성을 통해 전달한다. 비디오, 동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 활용할 수 있는 출처는 관련 신문기사, 영화, 교육방송을 포함한 방송매체 등이다.

본 교과목 강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집단강의(team-teaching)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다루어야 할 내용이나 영역이 광범위하므로 주별 강의 내용에 맞추어 대학 내 법학, 사회학, 여성학, 윤리학, 가족학 등 관련학과 교수 혹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본 교과목의 내용 전달에 더욱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3) 특강

교과목 내용 가운데 인권관련 단체, 조직, 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실천 현장의 소개와 더불어 생생한 사례의 전달과 같은 간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특강은 다음의 시연 혹은 실습을 실행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전초 작업이 된다.

4) 사례연구 발표 및 토론

인권과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위한 필수 과제로 부과한다. 4~5명의 학생들로 소집단을 구성하게 한 후 집단별로 인권침해 사례(예: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정신장애인 강제입소, 결혼이주여성의 성폭력 등)를 선정하도록 한다. 사례에 대한 현황을 요약 발표하게 한 후, 교과목 내내 학습한 인권관점이 실천되었는지, 실천에 장애가 된 사회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거친다.

5) 인권교육 참여

사례연구 발표 과제 외에 인권교육 참여도 인권과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위한 필수 과제로 부과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성인용 혹은 중사자용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복사물을 배포하도록 한다.

6) 시연 혹은 실습

시연 혹은 실습의 목적은 직접적인 참여 활동을 통하여 인권관련 사례를 경험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접목하려는 것이다. 시연 혹은 실습은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에서는 이론 수업을 필한 후 인권침해 사례를 가정하고 반나절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집단별 과제를 선정한 후 수업시간에 배운 사회복지 실천과정과 실천기술을 예행 연습하도록 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가령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관련단체, 기관, 조직 등에서 1주간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을 시연하도록 한다. 시연과 유사한 인권체험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할 수 있다. 첫째 단계와 둘째 단계는 14주차에 이루어진다.

셋째 단계에서는 시연 혹은 실습이 끝난 후 학생들 전원이 모여 평가회를 개최한다. 평가회에서는 시연 혹은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장단점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경험을 교환하도록 하며, 평가회 개최 후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평가회는 15주차에 이루어진다.

시연 혹은 실습을 위해 지역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사회복지 및 인권 관련기관, 단체, 조직의 목록을 작성하고 협력기관으로 선정하고, 직원 등 인력의 초빙과 특강 등 교류가 수반되거나 미리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V

사회복지학과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위한 전략 및 환경 조성

1. 인권교육과목 개설전략	119
2.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위한 교육정책	127
3.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위한 교육환경	139

1. 인권교육과목 개설전략

사회복지학과의 인권교과목 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의 청정지역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현장이 그러지 못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교육을 통한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계는 반드시 관철 되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권교과목 개설 전략을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상향식 접근방법 (Bottom-up approach)

여기서 말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이란 개별 대학 차원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인권교과목이 개설되고 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향식 접근방법의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학과 교과목의 활용과 인권교과목의 신설 등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권핵심과목 지정

이 전략은 인권교과목 개설방안과는 별도로 기존의 사회복지학과 개설교과목 중 인권문제를 강조하거나 혹은 교육하기 적절한 과목 혹은 1주차이상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과목 (인권관련교과목)들을 인권핵심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핵심과목은 학기 중 인권 강조에 있어서 인권관련 교과목과 인권교과목의 중간에 위치하는 과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주별 강의 주제로서 인권문제가 3~4주 정도 반영되어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예컨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최근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 다문화사회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등의 과목이 인권핵심과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목의 성격상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인권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사회복지윤리와 철학도 포함되어야 될 것이다. 인권핵심과목지정 방안은 실효성 측면에서 인권교과목 개설 방안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인권교과목의 개설은 과목 성격에 따라(예: 필수과목 혹은 선택과목) 과급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인권핵심과목의 지정은 복수의 과목이 동시다발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건 조성의 기회

가 될 것이다.

한편, 인권핵심과목의 지정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인권감수성 향상에 대한 대학자체의 관심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인권교육선도대학의 활용: 인권교과목 개설 혹은 인권핵심과목지정 대학

여기서 말하는 인권교육선도대학은 타 대학에 비해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인권교육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대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권교육선도대학의 활용을 통한 인권교육과목 개설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교과목의 신설과 관련하여,

첫째, 인권교과목 개설의 선도적(pilot) 혹은 모범적 실행(best practice)을 할 수 있는 학교 (“인권교육선도대학”)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포함되는 학교와 관련학과(사회복지학과)는 인권교과목 개설과 관련하여 향후 다른 학교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혹은 인권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표출 및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학교 부속 인권관련 연구소의 운영 여부 혹은 해당 대학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MOU 체결 여부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선정된 학교의 사회복지학과는 인권교과목을 교육과정 즉 전공과목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령을 고려할 때 인권교과목은 비법정전공과목의 성격을 띠게 된다. 경상대학교는 물론이거니와 학교의 사회복지학과마다 2~3개의 비법정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인권교육선도대학의 사회복지학과는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해 인권교과목을 전공과목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교과목 운영의 실제, 학생의 반응, 지역사회의 지지 및 반응 등 인권교과목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인권교육선도대학의 역할은 인권교과목의 개설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앞에서 제시한 바 있는 인권핵심과목의 지정 방안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경우 인권교육선도대학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인권교과목의 예비과목 등재

인권교과목을 전공예비과목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전공예비과목제도의 운영 여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학과별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의 학점수가 제한되어 있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과목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지금은 개설되지 못하지만 향후 교과과정 개편 시 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는 과목이 바로 예비과목이다. 연구진이 소속되어 있는 경상대학교를 비롯하여 사회복지학과에 개설되는 있는 사회복지법령상 비법정과목의 상당수는 이미 예비과목의 단계를 거쳐서 개설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4) 인권교과목의 교양과목 지정

지금까지 제시했던 전략은 사회복지학과 교과목 개설과 관련된 것임과 동시에 예비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양과목 개설 전략은 일반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관련된 것이다. 인권감수성 향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정도는 약하지만 파급효과는 전공과목보다 더 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러버스 모음집에 따르면 『인권과 복지』가 교양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학이 있는데 가능한 많은 학교로 확대 시킴으로서 인권감수성의 파급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이의 목적이다.

2) 하향식 접근방법 (Top-down approach)

이는 개별대학 혹은 인권교육선도대학의 차원에서 인권교육과목의 개설과 관련된 움직임이 시작되는 상향식 접근방법과는 달리 관련 법령의 제·개정 혹은 유관기관 간의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서 인권교육개설의 전국적인 확대를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이 지니고 있는 강제적 성격 혹은 유관기관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하향식 접근방법의 실행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관건은 이의 현실 가능성과 이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령 개정을 통한 인권교과목의 개설 제도화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 등 사회복지교육과 관련되는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인권교과목이 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으로 정착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령 정확히 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국가시험) 4항에 의하면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와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내용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의 범주에 인권교과목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는 인권교과목이 표준교과목 그 중에서도 법정과목(필수과목 혹은 선택과목)이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되어 있는 집단 즉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주관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와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 문제 반영을 통한 인권교육과목 개설의 활성화

인권교과목의 법정과목으로의 지정이 단기간 혹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은 사회복지사 시험과목 혹은 영역의 시험문제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실천과목의 사회복지실천론 영역과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영역 그리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과목의 사회복지정책론 영역 혹은 사회복지법제론 영역이 그 대상이다. 이는 사회복지법령의 개정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다. 동시에 이 대안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인권핵심과목의 지정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현행 시험관리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은 물론이다.

(3)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에의 인권교육요소 강화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에 인권교육요소의 강화 역시 대학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장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권교육요소의 강

화는 직접적으로는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교육 관심 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종사자 양성기관인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로 귀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설평가지표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가 인권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으며 이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지표의 하나인 인권교육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 대부분의 평가 지표에서는 최소 연 1회 실시가 점수 획득을 위한 충족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시설 종사자와 이용인(생활인)의 인권감수성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실시 횟수 보다는 교육 시간과 교육의 내용 더 나아가서 연차별 혹은 수준별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가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권 영역의 배점에 대한 상향 조정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다. 아래 <표 V-1>은 사회복지평가대상기관에 따른 평가 지표 영역별 배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V-1>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영역별 배점비율 (%)

시설종류		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관	아동복지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관	정신요양 시설
평가대상 연도		2012	2012	2013	2013	2014 (예정)	2014 (예정)
평가지표 영역별 배점(%)	시설 및 환경	3	5	10	10	4	10
	재정 및 조직운영	10	10	15	20	12	12
	인적자원관리	25	20	20	20	16	24
	프로그램 및 서비스	50	50	35	30	44	34
	이용자 (생활인)의 권리	3	3	10	10	8	10
	지역사회관계	9	12	10	10	16	10
합(%)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평가대상시설 평가지표자료

(http://www.cswe.co.kr/board/data/list.do?bd_gb=data&bd_cd=2&bd_item=0&po_item_gb=data2, 2013년 11월 13일 검색)

위의 <표 V-1>에서처럼 시설의 성격에 따라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이용자(생활인) 권리 영역에 부여되어 있는 배점비율은 상이하다. 이용 시설인 경우에는 3%부터 8%까지 부여되어 있는 반면 생활시설에 배당되어 있는 점수 비중은 10%이다. 반면 배점의 대부분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되었던 인권침해사례를 고려할 때 현행 배점비율은 시의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 평가 전담 기구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원과의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인권 관련영역의 배점 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4)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공조체제 마련

방금 제시한 세 가지 방법은 사회복지교육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와의 공식적 연계 구축을 전제로 한다. 첫째, 관련 법령 개정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아래 <상자 V-1>에서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 교부 등의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이다.

<상자 V-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개관

<p>연혁: 1967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의로 출범</p> <p>회원: 개인회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p> <p>설립목적 및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및 보급,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 도모 <p>주요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 교부 등의 수탁업무 등

출처: <http://www.welfare.net/site/intro/ViewGreeting.action>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 11월 13일 검색)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증 국가시험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는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개정 시 보건복지국 담당부서의 최우선 접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역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못지않게 공조 체제의 마련이 필요한 단체라 할 수 있다. 아래 <상자 V-2>는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의 성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상자 V-2〉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개관

<p>연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6년 3월 한국사회사업학교협의회로 출범 • 1971년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로 개칭 • 1999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로 개칭 • 2001년 한국사회복지대학교교육협의회로 개칭 • 현재: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p>설립 목적 및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복지교육발전지원을 통한 한국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 사회복지교육과정의 조사 및 연구 • 사회복지교육에 관한 출판 및 홍보 (예: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발간) • 단체회원의 교과과정에 대한 인정 (예: 사회복지교육 인증제도) <p>회원: 단체회원(2012년 현재 79개)과 개인회원</p> <p>단체회원가입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학점요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의 총이수학점 (대학원 18학점, 4년제 대학 혹은 대학학력인정교 14과목 42학점, 2년제 이상 대학 14과목 32학점 이상) • 전임교원요건: • 최소 3인이상 • 사회복지(사업)학 전공 전임교원이 전체전임교원의 2/3이상 (사회복지(사업)학 전공 전임교원→학사, 석사, 박사 학위 중 2개 학위 이상을 사회복지(사회사업)학으로 전공하고 수여한 자)

출처: <http://www.kcswe.kr/>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3년 11월 14일 검색)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임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한국 사회복지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교육의 큰 틀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단체이다.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발간과 사회복지교육 인증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인권교육과목 개설과 관련하여 동 단체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교과목의 비법정과목으로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단체가 바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이다. 당장 법정과목은 아니더라도 인권 교과목이 비법정과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이는 차후 법정과목으로 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한국 사회복지교육기관에 대해 교육을 통한 인권문제의 관심 제고를 강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발간이 바로 그것으로 이를 통해 인권관련교과목의 내용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 교과목에서의 인권적 요소의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개정을 통한 방법이 인권교육과목의 개설과 관련된 경착륙(hard landing)이라면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의 개정을 통한 방법은 이의 연착륙(soft landing)적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의 정기적인 교류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에서의 인권 그리고 인권교육요소의 강화 역시 대학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한다면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원 역시 공조체제 구축의 대상 기관에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5) 인권교육과목 개설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여건 조성: 공론의 장 마련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전략은 이해당사자들의 관심 및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들이다. 특히 사회복지실천 및 학계 종사자들은 이의 핵심에 있다고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의 관심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인권교육과목 개설의 필요성 인지를 위한 이슈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관기관(한국사회복지학회 등 학회를 포함하여)의 공동주관 혹은 후원 하에 정기적인 인권세미나 혹은 워크숍 개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인권문제, 대학교육에서의 인권 중요성, 인권교육과목의 정체성 확인 및 개설, 인권교과목 매뉴얼 개발, 인권교과목 강의방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권교과목 개설을 통해 인권감수성 향상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중의 하나로서 교과목 담당 교수자의 학보를 들 수 있다. 인권 교과목은 단순히 인권과 사회복지의 결합적 성격의 과목은 아닐 것이다. 인권

감수성을 토대로 인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 및 정확한 진단, 해결방안모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인권교과목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학계의 풍토는 인권과 사회복지 중 택일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적절한 인권교과목 교수자의 배출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권교과목 교수자의 양성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복지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수자 양성 과정의 개설, 인권전문가와 사회복지전문가의 공동 참여하에 실시되는 워크숍의 개최, 사례 발굴 및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긴밀한 네트워크의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위한 교육정책

1)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적 대안

사회복지학과에서 인권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 개설과 관련되는 규정들과 함께 고등교육에서보다 일찍 인권교육을 시작하였고 또한 활성화되고 있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근거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적 근거의 한계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인권교육과 관련한 두 개의 조문이 있지만, 이를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인권교과목을 개설근거로 활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5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중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명시함으로써, 인권교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 제19조 5호에 근거하여 동 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에서는 여섯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

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인권교육 관련 조항들은 인권교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이지만,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권고적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 개설을 강제하고 실질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두 개의 조문만으로는 인권교육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대학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고등교육법에서는 인권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1항에서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제1항 5호에서 학칙에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으로써 대학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학칙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인권교과목을 개설하려면 개별 대학의 학칙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인권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모든 개별학과 접촉하여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의 권고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으로 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 개설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한가지 사례: 초·중등 교과과정에서의 인권교육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 교과과정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교육과정과 관련한 동법 제23조 제1항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은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은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교과)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목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인권교육과 관련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3항은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 별책 7”을 통해 초·중등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교과목의 성격에서 ‘인권존중’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에서 7학년 일반사회영역에서 ‘인권보호와 헌법’, 그리고 10학년 일반사회영역에서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을 포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인권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7학년(중학교 1학년) 일반사회 영역

7학년 일반사회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보호와 헌법’에서는 “헌법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타난 것임을 이해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 원리, 보호 수단, 그리고 정부의 성격과 형태를 규정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내용으로 “인권 의식의 성장과 헌법의 관계를 이해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헌법을 보호하는 수단을 이해한다”, “우리나라 헌법이 구현하려는 정부의 성격과 형태를 이해한다”, “자신의 기본권을 실현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 의식을 가진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고시에 따라 집필된 사회교과서(지학사 출판) 인권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성과 삶의 질” 편의 ‘개인과 공동체’ 장에서는 학습 목표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구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파악한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학습내용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인간 존엄성의 의미,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필요한 권리, 인권 보장의 역사), 개인의 자유와 국가 정책 간의 갈등(개인의 자유와 국가정책 간의 대립, 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 참여(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필요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사회 참여의 중요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양면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일반사회 영역

10학년 일반사회영역의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에서는 “현대 민주 국가에서 법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이해한다. 오늘날 개인의 인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인식한다. 특히,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그 제한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인권을 비롯한 개인의 권익에 대한 침해는 불법 행위나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권익이 침해될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법 제도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변동·발전함을 이해하고, 인권 보장 및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① 현대 민주 국가에서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으로서 인권 보장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법의 역할과 관련지어 탐구한다. ②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원리를 인식하고, 특히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한다. ③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불법 행위나 범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을 탐색한다. ④ 법 제도에 대한 다양한 국민 참여 방법 및 사례를 파악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인권 의식과 법의식을 기른다. ⑤ 현대 사회생활에서 인권 및 사회 정의와 관련된 쟁점을 사회·문화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법과 사회 과목에서는 “정의와 인권이 법 제도의 기본적 가치로서 가지는 의의를 이해한다”, “국가 간의 분쟁 해결 및 국제적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을 탐색하고, 분쟁 해결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기능을 국제 연합(UN)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형사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단들을 파악한다” 로 기술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의 기본적 내용들을 이해시키고, 구체적인 권리 구제 방법과 절차들을 관련 기관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시한다” 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영역별 평가 방향에서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를 제시하고 있다.

(3)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적 대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인권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매우 취약하다. 그렇다고 교육부 고시를 통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에서와 같은 방안은 대학교육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학과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 학과 내지 학부의 인권교육의 의무성을 명시하든지 아니면 인권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대학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권교육의

법제화는 대학 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권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를 통한 표준교과목 인정획득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인권교과목 개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협의하여 인권교과목을 사회복지학과의 표준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주요 사업(정관 제4조)으로 ① 사회복지(사회사업) 교육과정 에 관한 연구·조사, ② 사회복지(사회사업) 교육에 관한 출판·홍보, ③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단체와의 교육·협력, ④ 단체회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 ⑤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학과 교과목과 관련하여 등록된 각 대학들의 표준 교과과정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권교과목이 표준교과목(법정 혹은 비법정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의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데,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 산하 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대외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교육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 또는 제반 현상에 대하여 법인의 공식적 견해 표방 및 회원들의 권익옹호와 대변, 행동지침 전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위원회와 인권교과목 개설의 당위성 및 교과목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사회복지사 1급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과목에 인권교과목 지정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 1월부터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자격을 신설하였고 1983년 5월부터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을 1·2·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1997년 8월부터 사회복지사 1급에 한해 국가시험을 보는 것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1급은 국가시험을 통해, 2급은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를 통해, 그리고 3급은 실천기관에서의 종사경험 등의 과정을 통해 각각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생의 경우 필수 4과목(12학점)과 선택 10과목(30학점)을 그리고 대학원생의 경우 필수 2과목(6학점)과 선택 6과목(18학점)만 이수해야만 하는데,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으로는 필수과목 10과목과 선택과목으로 20과목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2]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으로는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및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및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법제론)이다.

이렇게 볼 때 설령 사회복지학과에서 인권관련 교과목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전공학생들이 인권교과목을 수강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권관련 교과목을 사회복지학의 필수과목에 편입시키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과목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09년 4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시험과목에 “권리옹호와 성년후견 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인권관련 교과목을 시험과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과목으로는 필수과목으로 국어, 한국사, 영어 세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열된 행정학개론, 수학, 과학, 사회,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의 6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인권관련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정되게 하든지 아니면 선택과목인 사회에 인권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면 인권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권교육 교재 및 교수법 개발, 인권교육과목 교수자 육성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사회복지학의 학문영역과 특성을 반영한 인권교육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부터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집필 기준을 공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교육 교재의 집필기준을 보면 인권의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 실생활과 관련된 인권내용이나 사례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권관련 선언이나 국제협약들을 기

술하여 국제적 인권증진을 꾀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인권역사나 인권현안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교재가 집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적 교재 집필 지침에 더하여 사회복지학 인권 교재는 사회복지사의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인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보다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확실하고도 충분히 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사회복지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교재는 인권에 대한, 인권에 의한, 인권을 위한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필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인권이 갖는 권리의 목록과 내용 및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유형과 파괴적 결과를 내면화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는 지식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이란 학습자가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란 교육 그 자체가 다양성 존중이라든지, 다양한 정체성의 수용이라든지, 동등한 참여기회의 보장 등과 같은 친인권적 환경 속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전공자를 위한 인권교육 과정은 교육의 주체와 객체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경청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동등한 참여와 기회가 보장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의 차이가 존중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개혁해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이재호, 2008: 342).

이러한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인권교재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교재의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포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012년에 발표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보호, 여성 장애인의 모성보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권리보호, 결혼이

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인신보호 법상 구제청구 활성화,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67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과제들을 인권교재에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대학의 법학전문대학(law school)에서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된 것은 국제법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며(Steen and mathiesen, 2005: 151),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교과목을 ‘세계화’하여 국제사회사업교과목들이 인권교육의 이념적 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공자를 위한 인권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뿐만 아니라 인권관련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교재에 포함시킬 내용을 결정하여 각 대학들에서 가르칠 표준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08년 부산광역시·부산복지개발원이 발간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권교육교재에서 제시한 인권교육 교재 제작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자 V-3〉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권교육교재개발 고려사항

- ① 대상에 대한 이해: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의 이해는 인권과 관련된 특징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현장의 경우, 인권보장을 위한 대상아동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선언, 아동권리 국제협약 등 아동의 인권보장 규정에 관하여 알아야 하며, 아동의 인권보장을 방해하는 억압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 ② 인권관련 선언·규약법의 이해: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관련 국제법과 국내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논의의 필수사항이다. 예를 들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현장의 경우, 여성인권관련 법들, 즉 유엔여성차별협약이나 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등에 대해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할 것이다.
- ③ 인권침해 내용 파악-인권관련 이슈 인식: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의 내용을 법이나 선언 등의 근거에 맞춰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현장의 경우, 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권, 경제권, 노동권 등을 비롯해 다양한 권한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현장의 경우, 입·퇴원과 관련하여 인신구속 및 자기결정권에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종종 자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④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 활동: 인권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찾고, 대상자 인권에 기반을 둔 실천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을 침해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며, 인권침해적인 사회나 소속 단체의 구조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인권보장을 담보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당사자의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의 제공과 당사자를 임파워 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전문 인력의 자질함양에 노력해야 한다.

(2) 인권교육 교수법 개발

인권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인권교육 교수법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공자들을 수동적인 교육대상으로 설정한 후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의 강의 중심적 교수법으로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고려하는 인권교육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공자를 위한 인권교육은 수동적 지식 전달이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장체험 학습 중심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함양시켜 결국에는 인권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이 인권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와 같은 인권관련 공공기관, 민간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인권교육과목 교수자 육성

위에서 제시한 인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권강사 육성 또한 시급한 문제이다. 현재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인권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회복지사협회, 엠네스티 등의 협조를 통해 인권교육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다문화 인권교육, 사회복지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월드비전 운영 복지관 직장교육,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다문화 분야 인권교육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대학에서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모니터링 평가작업을 위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측정도구, 즉 인권교육 평가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인권교육 평가지수는 모니터링의 준거와 결과를 예상하여 지표를 구성해야 하는데, 주경필·권대봉(2008)은 모니터링의 준거를 과정모니터링과 결과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인권교육 모니터링에서도 과정모니터링과 결과모니터링이 필요한데, 과정모니터링에서는 프로그램 서비스의 유용성과 프로그램 관리 능력, 조직의 능률적 평가, 기관의 파트너십, 파트너십에 의한 영향력이나 결과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결과모니터링에서는 학습자 차원의 효과성, 프로그램 기관 차원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여기에 반드시 교육자와 학습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분석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평가로 밝혀진 부정적인 효과는 인권 프로그램의 결핍이나 부족요인으로 프로그램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며, 긍정적 효과는 프로그램의 가치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허종렬·나달숙·이대성, 2013: 186-187).

이처럼 사회복지전공 교과목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서도 과정모니터링과 결과모니터링의 항목을 모두 고려한 인권교육 평가지표와 지수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의 경우 단순히 학습자의 학습결과 모니터링을 하던 기존의 연구를 더욱 다각화하여 기관(기관의 파트너십 포함), 교육프로그램, 교육자, 학습자의 교육과정에서의 모니터링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결과모니터링 평가지표와 지수에서는 인권 지식 획득이나 감수성 증진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자가 인권교육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자료는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등에 대한 세세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주체로서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수강 이후 인권교육 내용이 인지적, 정의적으로 얼마나 체득되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기관,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국제인권 관련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정도를 평가하여 파트너십 형성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인권교육이 인권교육 교재의 집필기준에 부합하여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개발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인권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적·물적 협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 자신들과 관련되어 발생하는데,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인권교육을 교과과목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미래의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야기되는 인권문제의 원인 및 해결책을 학습과정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 인권단체, 인권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전문가와 사회복지대학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권훈련 매뉴얼(Human Rights Training Manual)을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인권사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사업 교과목들에서 사회사업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인권교과목을 개설함에 있어 요구되는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협조를 통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회 지역사무소의 확대 및 기능강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 개설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 개설에 따른 상호협력 및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사회복지학과에 개설되는 인권교과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하려는 인권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및 문헌의 제공이 필요한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되는 자료와 문헌 뿐 아니라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 강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권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를 확대·개편하여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록 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사무소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인권 관련 실제적인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살아있는 인권교육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권교육과정에서 이론과 실무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부산·광주·대구에만 개설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를 광역자치단체마다 설치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그 수준 향상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이란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개별 대학당국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대학 전체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보편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부의 정책방향 내지 정책목표에 따라 운영되지 않을 수 없고,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사회복지학과도 결국은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여러 학과 내지 학부의 한 단위학과이기 때문에 대학의 학칙 내지 방침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의 인권교육 강화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 그리고 대학당국 삼자의 협력체계 구축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위한 교육환경

1) 대학

‘인권과 사회복지’ 교과목을 개설하는데 대학 당국의 노력이 가장 결정적이다. 교과목을 사회복지학과에 개설하되 인권과 사회복지 협동 강사진을 구축하도록 한다.

2) 지역사회 관련기관

(1) 교육기관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초·중·고등학교도 최우선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교육기관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아동, 특수교육 대상인 장애아동 등 인권취약 인구에게 인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다른 기관들과 연계활동을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산하에 있는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 조직으로는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Weestart 센터, 각 학교 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복지실 등이 있다.

(2) 치안 및 법률기관

대표적인 치안기관으로는 경찰이다.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전체 지역사회 내의 인구취약 인구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범죄 신고가 가장 먼저 접수되고 이를 처리하는 일선조직이다. 특히 경찰서 내 아동·청소년 담당, 폭력대책반 등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 투입되고 있다. 이 밖에 법원, 법률상담소, 교도소, 청소년보호감호소 등도 치안 및 법률기관이 있다.

(3) 행정기관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거나 대처하는 다양한 조직, 활동, 운영을 실행하고 있다. 긴급전화 운영, 인권침해를 고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인권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실 운영, 유해업소 지도단속활동,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피학대 대상자 분리, 생활시설이나 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은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이를 담당하는 곳이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전담부서이다.

(4) 민간단체

지역사회 내에 각종 다양한 인권침해 방지 혹은 인권증진 및 인권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 사회단체 및 조직이 많다.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기관, 조직, 단체들도 포함된다. 지역사회 내 인권문제와 관련한 사회복지시설로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수용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아동학대에 방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이 있다. 인권관련 일반 단체로는 인권연대, 부모회, 권익옹호센

터 혹은 권익증진위원회 등이 있다.

〈표 V-2〉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 관련기관 일부 사례

기관명	사회복지서비스 실천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에 대한 범국가적 포괄적 정보와 법률상담 제공
법률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
YMCA, YWCA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해외이주노동자
지체장애인연합회	장애인복지

(5) 관련기관의 유기적 연계

지방자치단체 내에 민관합동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교수, 인권단체, 변호사, 당사자 및 가족의 대포 등 각 인권취약 인구 대상별로 인권옹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인권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합동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인권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거나 인권보장 체계 구축하는 것을 의논하도록 한다.

3) 인권전문인력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문인력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있다. 이들은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대인서비스 전담업무와 같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인권관련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과 같은 실무교육도 실행하는 등,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전수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교사, 강사, 교육공무원이 있다. 치안기관이나 법률기관에 있는 경찰, 법조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권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인권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전문가도 인권문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다. 각종 기관, 단체, 조직 등 지역사회 내 현장에서 인권운동, 인권실천, 권익옹호 등 실천가 혹은 행동가도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안 다양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인권저촉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인권법에 호소·의뢰할 수 있는 인력이 된다.



VI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인권보장과 존중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계나 실천영역에서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감수성 향상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인권침해는 클라이언트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권 침해 역시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복지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인권감수성 향상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특히 예비비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졸업 후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할 것이다. 이에 대학에서의 인권감수성 향상은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상의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특히 예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과목의 최상의 실행에 필요한 요소 및 이의 환경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교육과목은 인권 교과목과 인권 관련교과목을 합친 개념으로서 이는 결국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복지학과 개설과목(인권관련교과목)에 인권적 요소의 강화와 새로운 교과목인 인권교과목 개설 등 양면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전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제2장은 사회복지계의 인권교육 관심의 당위성 및 현황 분석 부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권과 사회복지 연계의 타당성, 유용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복지분야에서 나타나는 인권교육의 실상을 네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등장한 인권교육은 정신보건법령 등 일부 법령에 의해 선도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부분적이거나 사회복지사업법도 보수교육 내용의 하나로 인권교육의 실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 법령 등 모두 인권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서 나타나는 인권교육의 중요성 인식 부분이다. 인권교육실시여부가 거의 모든 평가 지표에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형식에 가까

운 평가 지표, 인권관련영역에 배정되어 있는 점수 비율의 열악성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두 영역이 사회복지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권교육에 관한 것이라면 세 번째 및 네 번째 영역은 대학교육현장에 관한 것이다. 먼저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인권교과목의 전공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학과의 개설 비중은 전체 대비 7.3%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인권보장 및 존중에 대한 당위론적인 강조와는 상치되는 대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네 번째 분석영역인 사회복지학과 개설 과목에서 차지하는 인권관련교과목 비중이다. 2010년에 비해 2012년의 사회복지학교 교과목 지침서는 인권관련교과목의 질적, 양적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이라는 제도적 요인과 대학 교육을 통한 사회복지전문성 제고라는 사회복지교육 목표는 인권교과목의 개설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대한 관심마저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임에 분명한 것 같다 (제도적 동형화).

본 연구의 제3장은 사회복지 전공학과의 인권교육의 해외사례를 분석하고자 했다.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 미국과 영국은 아직까지 세계인권교육 2차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경우 2009년 4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시험과목에 “권리옹호와 성년후견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인권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데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4장은 사회복지학과의 새로운 인권교과목으로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해서 교과목 개요, 목표 및 참고교재 등을 먼저 제시했다. 이어서 인권과 사회복지 개관,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인권취약인구와 사회복지실천의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목 내용 및 교과목 교육방법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마지막 본문 장인 제5장은 사회복지학과 인권교육개설을 위한 전략 및 환경 조성 부분이다. 먼저 개설전략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두가지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상향식 접근 방법으로서의 대학 차원의 인권핵심과목지정, 인권교과목 개설 혹은 인권핵심과목 지정대학으로서의 인권교육선도대학의 활용, 인권교과목의 예비과목 등재, 인권교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업법령 개정을 통한 인권교과목의 개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문제 반영을 통한 인권교육과목 개설의 활성화,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에의 인권교육요소 강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공조체제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5장의 두 번째 절인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위한 교육정책으로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인권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6조 제3항에서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서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제1항 5호에서 학칙에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으로써 대학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학칙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권고적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 개설을 강제하고 실질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학과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 학과 내지 학부의 인권교육의 의무성을 명시하든지 아니면 인권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대학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협의하여 인권교과목을 사회복지학과의 표준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인권교과목 개설의 당위성 및 교과목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인관관련 교과목을 사회복지학의 필수과목에 편입시키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과목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09년 4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시험과목에 “권리옹호와 성년후견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인권관련 교과목을 시험과목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복지학의 학문영역과 특성을 반영한 인권교육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학 인권교재는 사회복지사의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인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보다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발간된 교재로는 학문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전공자를 위한 인권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뿐만 아니라 인권관련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교재에 포함시킬 내용을 결정하여 각 대학들에서 가르칠 표준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인권교육 교수법 개발이 필요하며, 교수법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인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와 같은 인권관련 공공기관, 민간 인권단체 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현재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인권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매우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회복지사협회, 엠네스티 등의 협조를 통해 인권교육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모니터링 평가 작업을 위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측정도구, 즉 인권교육 평가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인권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적·물적 협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안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회 지역사무소의 확대 및 기능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 개설에 따른 상호협력 및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를 확대·개편하여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보호와 그 수준 향상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이란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개별 대학당국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대학 전체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보편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위한 교

육 환경 즉 효과적인 인권교과목 운영을 위한 환경적 요소로서 본 연구는 대학과 지역사회 관련기관 그리고 인권 전문인력간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 특히 예비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과목의 최상의 실행에 필요한 요소 및 이의 환경적 요소의 확인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현장과 대학교육 특히 사회복지학과에서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이에 대한 해외 사례, 그리고 새로운 인권교과목인 『인권과 사회복지』를 개관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위한 전략 제시 그리고 환경적 요소인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사항들을 제시했다. 기초연구 혹은 탐색적 성격의 연구로서 본 연구는 '무엇을 하자 (doing what)'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doing it how)' 부분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복지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 사회복지학과 인권교과목 개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포럼 혹은 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주제 발굴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방안,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만 제시되어 있는 인권교과목의 지속적인 개발 및 인권교과목 교재의 마련, 효과적인 인권교과목 강의 진행에 필요한 교수법 및 인권교과목 교수자의 육성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사회복지유관기관 혹은 단체 그리고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수택 외. 2009. 『대학인권지표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6.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사회복지분야(노인) 인권 교육교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사회복지분야(정신장애) 인권 교육교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3. 『대학교 인권교과목 실러버스 모음집』.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한국아동복지연합회. 2006. 『사회복지분야(아동)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교재』.
- 국가인권위원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06. 『사회복지분야(장애인)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교재』.
- 국가인권위원회/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7. 『사회복지분야(노인복지시설)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교재』.
- 국가인권위원회/한국정신요양협회. 2007. 『사회복지분야(정신장애요양시설)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교재』.
- 국민권익위원회. 2011.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 김대현. 2011. 『교육과정의 이해』. 학지사.
- 김미옥·김정희. 2011.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경험에 관한 질적연구사례 -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1): 29-55.
- 김중섭 엮음.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인권총서 3. 도서출판 오름.
- 김통원·윤재영. 2011. 『한국 사회복지교육 인증기준 및 매뉴얼 개발연구 최종보고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김형식. 2008. “사회복지와 인권: 실천적 접목의 과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인권인식 확산과 활성화방안 발표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 박영란 외. 2004.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 박태영. 2002.,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권에 관한 소고”. 『사회복지』. 겨울호.
- 보건복지부. 2010.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2010년도 인권교육 종합 안내』. 보건복지부.
- 부산광역시·부산복지개발원. 2008.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권교육교재, 부산: 부산광역시·부산복지개발원.
-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비교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

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4호: 178-208.

- 심창학. 2007.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유럽의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3권 2호: 61-85.
- 심창학. 2011. “인권과 사회복지: 연계의 논리적 구조와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심창학·강수택 (역음). 『사회정책과 인권: 인권기반 사회정책의 관점과 영역』. 도서출판 오름 :83-123.
- 심창학. 2013.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유용성과 실행가능성”. 한국사회학회 역음. 『화합사회를 위한 복지: 2013 한국사회학회 복지 대토론회』. 도서출판 나남: 108-142.
- 심창학·강수택 역음. 2011. 『사회정책과 인권』.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총서 1. 도서출판 오름.
- 오정수·류진석. 2009.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양옥경 외. 2011. 『사회복지실천론』. 나남.
- 윤찬영, 2011.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 이영환, 2009. “인권과 사회복지”, 김동춘 외 (역음),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인권을 위한 강의』. 인권평화센터: 71-105.
- 이용교, 2004.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접근: 성과와 과제”, 박영란 외,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105-181.
- 이용교 외, 2005.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2005년도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이재호. 2008. “인권교육의 재정립과 실천방향 모색”. 『정신문화연구』 31(3): 333-362.
- 이혜원 역. 2005. UN centre for Human Rights. 『인권과 사회복지』. 학지사.
- 임재홍. 2008. 미국대학에서의 인권교육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인권법평론』 제2호.
- 장수미 외.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학지사.
- 전광석, 1988.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국제 기준”. 『강원법학』 제10권: 347-411.
- 정진경. 2010.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1987-2004년 헌법판례 현황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1): 395-423.
- 정책교육국·인권교육과. 2012. “2012년도 전국대학교 인권교과목 개설현황조사 결과보고”. 국가인권위원회: 1-20.
- 조원탁 외. 2013.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주경필·권대봉. 2008.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준거체계 개발연구”, 『성인평생교육연구』 11(1): 27-55.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2008.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0, 2012.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한국사회복지교육

협의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1. 『2011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보건복지부·한국 사회복지사협회.
- 허종렬·나달숙·이대성. 2013. “국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외국의 인권교육 제도화 사례와 시사점”. 『법과인권교육연구』 6(1): 171-202.
- 황성철 외. 2009. 『사회복지행정론(개정판)』. 학현사.
- Beckett C. & Maynard A. 2005. *Values and Ethics in Social Work: An Introduction*. Sage Publications.
- Beetham, D. 1995. “Introduction: Human Rights in the Study of Politics”. *Political Studies*, 43: 1-9.
- Bentley K. J. 2002. *Social Work Practice in Mental Health*. New York: Brooks/Cole.
- Bonvin, J.-M. and Farvaque, N., 2007. “A capability approach to individualised and tailor-made activation”. in R. van Berkel and B. Valkenbourg, *Making it personal, Individualising activation services in the EU*, Bristol, The Policy Press: 45-66.
- Dean, H.. 2007. “Social Policy and Human Rights: Re-thinking the Engagement”. *Social Policy & Society* 7(1): 1-12.
- Deweese, D. and Roche, S. E. 2001. “Teaching About Human Rights in Social Work”. *Journal of Teaching in Social Work* Vol. 21(1/2): 137-155.
- DiMaggio, P.J., Powell, W.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8, No. 2: 147-160.
- Downs S. W., Moore E., McFadden E. J., Michaud S. M., & Costin L. B. 2004.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7th Ed. Pearson Education, Inc.
- Forsythe, D. P. 1998. “Human Rights fifty years af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1(3): 507-511.
- Fredman, S. 2008. *Human Rights Transformed*, 조효제 (역) 2009.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 Handler, J. F. 2003. “Social citizenships and Workfare in the US and Western Europe: From Status to Contrac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229-243.
- Hepworth D. H. Rooney R. H. & Larsen J. A. 2002. *Direct Social Work Practice: Theory and Skills*. 6th Ed. Brooks/Cole.
- Heumann L. F., McCall M. E. & Boldy D. P. 2001. *Empowering Frail Elderly People: Opportunities and Impediments in Housing, Health, and Supportive Service Delivery*. Westport. CT: Praeger.
- Ife, J.. 2001.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toward rights-based practice. 김형식·여지영

(역).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 복지.

- _____. 2006. “Human rights and Human servic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국가인권위원회 (편). 『Jim Ife 초청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23-43.
- ILO. 2010. *World Social Security Report 2010/11. Providing coverage in times of crisis and beyond*. ILO.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1996. *International policy on human rights*. IFSW General Meeting. Hong Kong.
- Johnson L. C. & Yanca S. J. 2004. *Social Work Practice: A Generalist Approach*. 8th Ed. Allyn and Bacon.
- Lillich, R. B. 1983. “The teaching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U.S. law school”.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7: 855-861.
- Marshall. T.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T. H. Marshall and T. Bottomore (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Pluto Press: 3-54.
- Martin, J. P. 1987. “Human rights-Education for what?”, *Human Rights Quarterly* 9: 414-422.
- Narayan, D. et al.. 2000. *Voices of the Poor. Crying out for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Bank.
- Nevile, A. 2010a. “Values, rights and concepts of citizenship”. A. Nivile(ed.). *Human Rights and Social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 of values and citizenship in OECD countries*. Edward Elgar: 1-19.
- _____. 2010b. “On the margins ? The influence of ‘rights talk’ on policy and practice”. in A. Nivile(ed.). *Human Rights and Social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 of values and citizenship in OECD countries*. Edward Elgar: 224-235.
- Newman, J.. 2013. “Citizenship”. in B. Greve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Routledge: 40-46.
- OHCHR. 2002. “Human rights,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s: Health, Food and Water”. *A Background Paper*: 1-16.
- OHCHR. 2004. “Human rights and Poverty Reduction: a conceptual framework”: 1-46.
- OHCHR. 2006.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유엔 인권고등판문관실. 2008. 『인권에 입각한 빈곤 퇴치 전략: 원칙 및 지침』(HR/PUB/06/12), 유엔인권고등판문관실(OHCHR)· 국가인권위원회.
- OHCHR. 2008. “Human Rights, Health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HR/PUB/08/05): 1-86.
- Reichert, E.. 2007. “Human righ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Creating a New Paradigm for Social Work”. in E. Reichert (ed.), *Challenges in Human Rights, A Social Work*

- Perspective*,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15.
- Rose S. R., & Fatout M. F. 2002. *Social Work Practice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Allyn & Bacon.
- Rothman J. C. 2002. *Social Work Practice across Disability*. Allyn & Bacon.
- Serrano Pascual, A.. 2007. “Reshaping Welfare States: Activation Regimes in Europe”, in A. Serrano Pascual and L. Magnusson (eds.), *Reshaping Welfare States and Activation Regimes in Europe*. P.I.E. Peter Lang: 11-34.
- Spicker, P.. 2007. “Definitions of poverty: twelve clusters of meaning”. in P. Spicker et al.. *Poverty: an international glossary*. CROP international studies in poverty research: 229-243.
- Staub-Bernasconi, S., 2007. “Economic and Social rights: The Neglected Human Rights”. in E. Reichert (ed.), *Challenges in Human Rights, A Social Work Perspective*.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38-161.
- Steen, J. A. and Mathiesen, S. 2005. “Human Rights Education: Is Social Work Behind the Curve?”. *Journal of Teaching in Social Work* 25(3/4): 143-156.
- Sue, D. W. 2005.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John Wiley & Sons Inc.
- Turner, B. S.. “Outline of a theory of human rights”. *Sociology* 27(3): 489-512.
-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Rights.1994.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A manual for schools of social work and the social work profession*. New York: United Nations.
- Vasak, K.. 1977. “Human Rights: A Thirty-Year Struggle: the Sustained Efforts to give Force of law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ESCO Courier* 30:11. Pari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Witkin, S. L.. 1998.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editorial”. *Social Work* 43(3): 197-201.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 법무부.2012.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보도자료, 법무부.
- ILO. Social Security(Minimum Standards) Convention No. 102 (1952).
- http://www.lawnb.com/law/law_list.asp (법령검색)
- <http://www.hrp.or.kr/sub0202.php>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 <http://www.kawiv.or.kr/src/sub11.php>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http://edu.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http://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ShowMainPage.do> (SPF 사이트)

<http://www.hclpd.gouv.fr/un-droit-opposable-qu-est-ce-que-c-a32.html> (프랑스의 대항적 권리)

<http://www.ohchr.org/EN/PublicationsResources/Pages/SpecialIssues.aspx> (유엔인권고등판문관실)

<http://www.welfare.net/site/intro/ViewGreeting.action>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kcswe.kr/>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http://www.cswe.co.kr/index.do>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원)

사회복지분야 대학교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연구

| 인 쇄 | 2013년 12월 15일

| 발 행 | 2013년 12월 15일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858 | F A X | (02) 2125-09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 978-89-6114-306-6 93370